

법제교류 연구 09-17-□□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김한철 ·

· 박광동

Шаюсуф Усманов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Legal System of
Uzbekistan

연구자 : 김한철(법무법인 화우 러시아 변호사)

Kim, Han-Chil

(타슈켄트 법과대학 교수)

쇠유스프 우스만노프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Шайусиф Усманов
Park, Gwang-Dong

2009. 6. 3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국문 요약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중심의 민주공화국 형태를 지닌 국가이다.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분리되어 있고, 입법기관은 올리 마질리스(Oliy Majlis)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된다. 행정부는 내각과 14개의 부(Ministry), 9개의 국가위원회, 7개의 처(Agency) 및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사법기관은 헌법법원, 일반법원 및 경제법원으로 구분된다.

우즈베키스탄 법제도의 기본 특징은 법률체계가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어 우리의 법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②, 구소련 및 러시아 법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아직도 구소련법의 잔재^④가 많이 남아 있고, 러시아 법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며, 우리와 달리 민법과 상법이 구분되지 않은 민상합일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불완전한 법치주의 국가의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관련 집행법률로서 외환관리법은 중앙은행의 강력한 외환통제정책을 통해 외국환의 자유로운 입반출에 많은 제약을 하는 특징이 있고, 사유화법은 우즈베키스탄이 부실한 국영기업 등을 사유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도 사유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한편, 하층토법은 우즈베키스탄의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자의 지하자원개발 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었으며, 주민고용법은 국내의 고용시장 안정 및 실업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의 투자활동과 관련한 주요 법제도와 관련하여 고용제도의 특징으로 우즈베키스탄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

하는 노동법의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용자보다는 고용자의 이익을 많이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은 매년 세법의 개정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기업 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범위는 크지 않다.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직까지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토지소유권을 대신하여 토지영구사용권, 토지임차권 등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키워드 : 올리 마철리스, 외환관리법, 사유화법, 하층토법, 주민고용법,
고용제도, 조세제도, 토지제도, 토지소유권, 토지영구사용권,
토지임차권

※

Abstract

Uzbekistan is a democratic republic, of which power is concentrated on the president. But, it shows the separation of three powers, which ar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The legislative branch is called ‘Oliy Majlis’ and divided into the Upper House and the Lower House. The executive branch consists of a cabinet and 14 ministries, 9 national commissions, 7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he judicial branch consis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urts of ^①General Matters, and the Economic Courts.

The basic principles ^② of the Uzbek legal system are as follows: Since the legal system is based on the Continental ^③ legal system, it is similar to that of Korea the legal system, which was largely affected by those of the Soviet Union and Russia, still has vestiges of the Soviet law and is ^④considerably similar to the Russian legal system; unlike the Korean legal system, the Uzbek system takes the principle of union of the civil law and the commercial law, in which the two laws are not separated; and although Uzbekistan legally guarantees the status of foreign investors, it generally shows characteristics of imperfect legalism compared with that of developed countries.

Among the important statutes of Uzbekistan, the Foreign Exchange Control Act considerably restricts free import or export of foreign exchanges through strict foreign exchange control policies of the central bank. And, the Privatization Act shows the efforts of Uzbekistan to promote the economy through the privatization of insolvent state-owned companies, and it allows foreigners or foreign corporations to own the pri-

vatized companies. Meanwhile, the Subsoil Act provides for legal matters regarding Uzbekistan's development of underground resources and its purpose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Uzbekistan in the development of underground resources by foreign investors. And, the Resident Employment Act provides measures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labor market and the protection of the unemployed in Uzbekistan.

Meanwhile, in connection with the major laws of Uzbekistan on foreigners' investment activit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ment system in Uzbekistan are that Uzbekistan is paying much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law that complies with th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it seems to have a tendency to put the interests of employees before those of employers. As for taxation, Uzbekistan is making efforts to facilitate business activities within the country by revising its tax laws every year, but the tax benefits that foreign investors could actually receive are not that large. In connection with the land system, the land ownership has not yet been recognized in Uzbekistan, and instead of the land ownership, such systems as permanent right to use a land and right to lease a land are used.

Key Words : Oliy Majlis, Foreign Exchange Control Act, Privatization Act, Subsoil Act, Resident Employment Act, employment system, taxation, land system, land ownership, permanent right to use a land, right to lease a land

※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서 문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14
3. 연구의 방법	15
제 1 장 우즈베키스탄의 개요	17
1. 일반현황	17
(1) 지 리	17
(2) 지형 및 기후	17
(3) 행정구역	17
(4) 인구 및 민족	18
(5) 종 교	18
(6) 언 어	18
2. 경제현황 개관	19
3. 통치제도 개관	20
(1) 의회(Олий Мажлис)	20
(2) 내 각	22
(3) 법 원	23
(4) 대통령	25

4. 법률제도 개관	26
(1) 우즈베키스탄 법제도의 기본 특징	26
(2) 법원(法源)	27
제 2 장 정부조직과 관련 집행법률	35
1. 개 요	35
2. 각부의 기능 및 과제와 관련 집행법률	35
(1) 내무부	35
(2) 외무부	36
(3) 법무부	36
(4) 대외경제부	37
(5) 경제부	38
(6) 재무부	39
(7) 노동사회보장부	39
(8) 농업수산부	40
(9) 비상사태부	41
(10) 고등중등특별교육부	41
(11) 국민교육부	42
(12) 문화체육부	42
(13) 국방부	43
(14) 보건부	43
3. 각 국가위원회의 기능 및 과제와 관련 집행법률	44
(1) 국가재산관리위원회	44
(2) 국가통계위원회	44
(3) 국가반독점경쟁발전위원회	45

(4) 국가조세위원회	46
(5) 국가관세위원회	46
(6) 국가환경보호위원회	47
(7)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	48
(8) 국가건축건설위원회	48
(9) 국가토지자원, 측량, 토지대장위원회	49
4. 각청의 기능 및 과제와 관련 집행법률	49
(1) 언론정보청	49
(2) 정보통신청	50
(3) 표준인증청	51
(4) 공공서비스청	52
(5) 자동차하천운송청	52
(6) 저작권청	52
(7) 문서보관청	53
제 3 장 주요 관련 집행법률	55
1. 도입	55
2. 주요 관련 집행 법률의 검토	55
(1) 외환관리법(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55
(2) 사유화법(Закон О разгосударствении и приватизации)	59
(3) 하층토법(Закон О недрах)	62
(4) 세무서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е)	68
(5) 세관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е)	70
(6) 대외경제활동법(Зако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72
(7) 주민고용법(Закон О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75

(8) 경쟁 및 독점제한법(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78
(9) 자연독점법(Закон О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ях)	83

제 4 장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률 및 제도

1. 도입	85
2. 노동법	85
(1) 고용계약의 체결	85
(2) 고용계약의 형태	86
(3) 고용계약의 의무적 기재사항	86
(4) 고용계약의 무효	87
(5) 견습기간	87
(6) 파트타임고용계약	88
(7) 고용계약의 종료	88
(8) 외국인과의 고용계약	90
(9) 임금	90
(10) 근로시간	91
(11) 휴일 및 휴가	92
3. 토지제도	93
(1) 개요	93
(2) 권한기관 및 권한 내용	94
(3) 국가토지카다스트르(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земельный кадастр)	95
(4) 토지에 대한 권리의 형태	95
(5) 법인 및 자연인의 토지소유권 발생 근거	95
(6) 토지영구사용권	96

(7) 토지임차권	96
(8) 토지 사용료	97
(9)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7
(10)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료	98
4. 조세제도	98
(1) 개 요	98
(2) 주요세목	98
(3) 기타 의무납부(другие обязательные платежи)	99
(4) 간소화된 세금	100
(5) 주요 세목의 내용	100
(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	107
5. 외국인투자법	110
(1) 목적 및 과제	110
(2)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110
(3) 외국인 투자 형태	110
(4) 외국인투자기업	111
(5)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지위	111
(6)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112
(7) 외국인투자의 의무	112
(8) 외국인노동자의 채용	112
6. 나보이경제특구관련법규	113
(1) 개 요	113
(2) 나보이주 산업-경제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	113

결 어 117

도 표 119

1. 통치기구도표 119

2. 정부조직에 따른 관련 법률 도표 120

3. 법체계 도표 123

[참 고 문 헌] 125

[참고자료]

우즈베키스탄 법규법 129

서 문

1. 연구의 목적

우즈베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중심 국가이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소련시대부터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소련 붕괴 이후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 왔고, 우리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소 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게도 우즈베키스탄은 연구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잠재가능성이 큰 투자국가로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우즈베키스탄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정부조직 및 법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기업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의 통치구조와 법체계 및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각부, 각국가위원회 및 각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며, 각 정부기관의 관련 집행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실무상 외국인투자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기업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게도 우즈베키스탄의 법체계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개요에 대해 일반현황, 경제현황, 통치제도 및 법률 환경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일반현황은 우즈베키스탄의 지리, 기후, 행정구역, 인종, 종교 및 언어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경제현황에 대해서는 2009년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에 대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현황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통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입법, 행정, 사법기관 및 대통령의 기능 및 권한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법률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우즈베키스탄 법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 언급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의 법원(法源)에 대해 소개하였다. 본 연구의 제1장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우즈베키스탄 법률 환경에 대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제2장 정부조직과 관련 집행 법률에 대해 각부, 각국가위원회 및 각청의 기능과 과제 및 관련 집행 법률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제3장 주요 관련 집행 법률의 내용에서 여러 관련 집행 법률 중 실무상 가장 쓰임새가 많은 법률을 선택하여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본장에서 외환관리법, 사유화법, 지하자원법, 대외경제활동법 등은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시켰다.

본 연구 제4장은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분야를 선택하여 소개하였다. 노동법, 세법, 토

지제도는 실무상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아야 될 필수적인 내용들을 전부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보장법과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나보이경제특구에 대한 대통령령의 내용도 소개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 및 관련 법령의 검토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문헌 등의 검토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변호사와의 세미나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법률 환경은 우리나라에 비해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참고할만한 법률 관련 서적이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관련 논문 역시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률 서적 및 논문을 참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러시아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특별히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노력하였고, 우즈베키스탄 관련 실무상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대부분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개된 내용은 대학교, 연구소 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매우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1 장 우즈베키스탄의 개요

1. 일반현황¹⁾

(1) 지 리

우즈베키스탄은 동경56도-73도, 북위37도-46도 사이의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아랄해 남해안, 남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까지 국토가 길게 뻗어 있다. 국가면적은 447,400평방미터로 한반도의 약2배, 남한의 약4.5배이며, 이 중 국토면적은 425,400평방미터이며, 호수 및 강의 면적은 22,000평방미터이다.

(2) 지형 및 기후

우즈베키스탄은 국토의 2/3가 사막과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토의 80%에 해당하는 면적이 서부지역에서부터 중부지역에 걸쳐 평지로 되어 있고, 튜란지방의 저지대인 키질쿨사막이 중앙부에 펼쳐져 있다.

기후는 고온 건조한 대륙성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연중 건조하며 특히 여름에는 뜨겁고 건조한 열대공기로 인하여 약30-45도의 더위가 계속되며, 겨울에는 보통 3-10도의 기온을 나타낸다.

연중 강우량은 매우 적은 편이지만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비교적 강우량이 많아 겨울에는 습기가 많은 편이다.

(3) 행정구역

우즈베키스탄의 행정단위는 12개의 주와 1개의 공화국 및 1개의 도시(타쉬켄트시) 총 14개의 행정단위로 구분된다.²⁾ 이외에 174개의 구

1) 윤재희, 강명구, 중앙아시아 및 극동러시아의 경제, 선학사, 17-24쪽 참조

2) 12개의 주는 타쉬켄트주, 안디잔주, 부하라주, 사마르칸트주, 지작주, 카스카다린

(район)와 197개의 시, 115개의 도시형 촌락 등의 행정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4) 인구 및 민족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전체 중앙아시아 인구의 약 60% 차지), 독립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2007년 7월 기준으로 약 2,700만 정도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다민국국가로서 약 100여 민족이 거주하고 있고, 약 80%를 우즈베크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5.5% 러시아인, 5% 타직인, 3% 카작인, 2.5% 카라칼팍인, 1.5% 타타르인, 1% 키르기즈인, 0.76% 고려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종교

헌법에 의거 우즈베키스탄은 세속국가이나, 국민의 약 88%가 이슬람교도이고, 이들 중 대부분은 순니파이다. 이슬람 이외에도 그리스정교도가 9%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톨릭 등을 신봉하고 있다.

(6) 언어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언어는 우즈베크어나, 국민의 약 80% 정도는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다.

주, 나보이주, 나만간주, 수르한다린주, 시르다리야주, 페르가나주, 호렌즘주가 있고, 1개의 공화국은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이며, 1개 도시는 타쉬켄트시이다.

2. 경제현황 개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1990년대 초 어려움을 겪다가 1996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1분기 GDP 성장률은 2008년 동기 대비 7.9%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력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 1분기 이후 외국인투자는 증가추세이다.

한편, 2009년 1분기 인플레이션율은 2.7%에 그치고 있고, 수출은 2008년 대비 6.1%가 증가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아래와 같다:

주요거시경제지표³⁾

구 분	2005	2006	2007	2008
GDP 성장률(%)	7.0	7.3	9.5	9.0
산업생산 (억 달러)	90.2	117.1	141.8	126.0*
수출 (억 달러)	54.09	63.9	89.92	100.9*
수입 (억 달러)	40.91	43.96	52.36	56.3*
무역수지 (억 달러)	13.18	19.94	37.56	44.6*
소비자물가 상승률(%)	7.8	14.2	12.3	11.1

주: *는 2008년 3분기

3)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청 자료 참조.

3. 통치제도 개관

(1) 의회(Олий Мажлис)

1) 구성 및 임기

우즈베키스탄의 입법기관은 “올리이 마즐리스”(이하 “의회”)이다. 의회는 하원(Законодастельная палата 또는 нижняя палата)과 상원(Сената 또는 верхняя палата)로 구성되어 있고, 상원과 하원의 임기는 각각 5년이다(헌법 제76조).

하원은 120명의 지역구 하원의원(депутаты)로 구성되고, 상원은 지역대표기구로 구성되며, 그 구성원을 상원의원(члены Сената Олий Мажлиса)이라고 칭한다.

상원의원은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12개의 주 및 타쉬켄트시에서 각 6명씩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비밀투표는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12개의 주 및 타쉬켄트시의 대표기관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학문, 예술, 문학, 산업 등의 분야에서 가정 지명한 사람들 중에서 16명의 상원의원을 임명한다(헌법 제77조).

2) 상 하의원 자격요건

상 하의원이 되기 위한 요건은 선거일에 25세에 달하고, 5년 이상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시민이어야 한다. 동일한 사람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겸할 수 없다(헌법 제77조).

3) 권한

상원과 하원의 공동 권한에 속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우즈베키스탄 헌법의 채택 및 수정;
- 헌법적 법률 및 법률의 채택 및 수정;

-
- 국민투표 실시 결정 및 시행일 결정4);
우즈베키스탄 대내 및 대외 정책의 기본방향 결정과 국가전략프로그래ムの 채택;
- 우즈베키스탄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시스템 및 권한 결정;
- 우즈베키스탄에 국가조직의 합류 및 탈퇴 결정;
- 세관, 외환 및 차관 문제의 법적 조정;
- 우즈베키스탄 내각에 제출할 국가예산의 채택 및 국가예산 집행의 감독;
- 세금 등의 결정;
- 우즈베키스탄 행정지역 및 경계 문제의 법적 조정;
- 정부부처, 국가위원회 및 기타 국가기관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대통령령의 승인;
-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대통령이 추천한 총리후보의 심사 및 승인;
- 의회 인권대표 및 부대표의 선임;
- 비상사태 등에 대한 대통령령의 승인;
- 국제계약의 비준 및 파기.
- 상기 문제들은 하원에서 먼저 심의 후 상원에서 다시 심의한다(헌법 제78조).

하원의 배타적 권한은 다음과 같다:

- 하원의장, 부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 검찰총장의 제청에 따라 하원의원의 불간섭권 취소 결정 등(헌법 제79조);

4)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제안은 의회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및 국민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국민투표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투표법 제13조).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국민투표 실시 제안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거 각 연방주체별로 국민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5% 이상의 서명을 모은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회에 국민의 국민투표 제안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국민투표법 제12조).

- 상원의 배타적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상원의장, 부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법원장의 선임;
 - 대통령이 추천한 대법원장의 선임;
 - 대통령이 추천한 최고경제법원장의 선임;
 - 대통령의 추천에 따라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
 - 우즈베키스탄 검찰총장 및 부총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대통령령의 승인;
 - 대통령이 추천한 중앙은행장의 임명과 해임;
대통령의 제청에 따른 사면의 결정;
검찰총장의 제청에 따른 상원의원의 불간섭권 취소 결정 등(헌법 제80조).

(2) 내 각

1) 기 능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집행권한을 가지며, 경제, 사회, 종교 분야의 효율적인 기능을 감독하며, 법률, 의회의 결정, 대통령령의 이행 등을 보장한다. 내각은 그 활동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내각법 제1조).

2) 구 성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총리, 부총리, 각부장관, 각국가위원회 위원장들 및 카라칼팍스탄 공화국⁵⁾ 행정부 수반으로 구성된다.

5)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은 우즈베키스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은 주권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의 주권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 보호한다(우즈베키스탄 헌법 제70조). 한편,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은 자신의 헌법, 국기, 문장 및 국가도 가진다(카라칼팍스탄 공

내각은 대통령이 구성하고, 총리후보는 대통령의 추천에 따라 의회가 승인한다. 내각의 각료(Члены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는 총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승인한다(헌법 제98조).

3) 권한

내각은 경제, 사회 및 종교 등의 분야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보장하며, 법률의 집행, 의회결정, 대통령령의 집행을 보장한다.

대통령은 내각의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내각의 권한 사항에 관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할 수도 있으며, 내각의 명령(посотановление)을 취소할 수도 있다. 내각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대통령 및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헌법 제98조).

4) 내각 회의

내각회의는 국정운영,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결정한다. 내각회의는 분기별 최소 1회 열리고, 내각회의의 의장은 총리이다. 다만, 대통령도 내각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내각법 제13조).

(3) 법원

1) 지위

우즈베키스탄 헌법은 사법권은 입법, 행정권, 정당 및 기타 사회단체로부터 독립적이다(헌법 제106조).

화국 헌법 제5조). 하지만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우즈베키스탄 헌법 및 법률은 강행적인 효력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헌법 및 법률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헌법법원은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헌법이 우즈베키스탄 헌법 및 법률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준다(우즈베키스탄 헌법 제109조).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시민은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의 시민도 된다(우즈베키스탄 헌법 제21조).

2) 구 성

우즈베키스탄에서 법원은 헌법법원(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대법원(Верховный суд) 및 최고경제법원(Высший хозяйственный суд)⁶⁾으로 구성된다. 특별법원의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 제107조).

3) 헌법법원

헌법법원의 판사는 정치 및 법조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출된다. 판사는 하원의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헌법법원장 및 헌법법원 판사는 정당인을 될 수 없고, 유급겸직을 할 수 없다. 헌법법원 판사는 불가침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판결에 있어 독립이 보장된다(제108조).

헌법법원은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며,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한다.

헌법법원의 판결은 확정적이고, 공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109조).

4) 일반법원

민사, 형사 및 행정소송의 수행은 일반법원에서 담당한다.

5) 경제법원

우즈베키스탄에서 법인간의 분쟁 등은 경제법원에서 담당한다.

6)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법원은 법인간의 분쟁 등을 해결하며, 사법기관으로 중재원과 구분이 되고, 3심제이다.

(4) 대통령

1) 지 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반이고, 국가권력의 합의된 기능 및 상호작용을 보장한다(헌법 제89조).

2) 자격요건

대통령의 자격요건은 30세 이상의 연령,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우즈베키스탄에 10년간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연속하여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치러진다(헌법 제90조).

3) 주요 권한

- 우즈베키스탄 시민의 권리와 자유, 헌법 및 법률의 수호자
- 우즈베키스탄의 주권, 안보 및 영토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
- 국내 및 외국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대표;
- 상원에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할 외교관의 추천;
- 상원의장의 추천;
- 국무총리의 추천 및 해임;
- 국무총리가 추천한 각료의 승인 및 해임
- 검찰총장 임면권;
- 헌법법원장, 헌법법원판사,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최고중재법원장, 최고중재법원판사, 중앙은행총재 등의 추천;
- 주지사 및 타쉬켄트 시장 등의 임면 등(헌법 제93조).

4. 법률제도 개관

(1) 우즈베키스탄 법제도의 기본 특징

1) 대륙법계

우즈베키스탄의 법률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헌법분야, 민사법분야, 형법분야, 행정법분야 등의 실체법과 및 민사소송법, 경제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절차법 분야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법률체계는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법률체계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구소련 및 러시아 법제도의 영향

우즈베키스탄의 법제도의 특징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구소련법제도 및 러시아법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토지제도 같은 경우, 소련시대와 같이,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토지소유권제도를 대신하여 토지영구사용권, 토지임시사용권 등과 같은 토지사용권 및 토지임차권 제도 등이 존재한다.

또한 소련의 붕괴 후에도 우즈베키스탄의 법제도는 상당부분 러시아 법제도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법제도와 상당부분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민상합일주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와 달리 민법과 상법이 구분되지 않은 민상합일주의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민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민법에서 회사 등 영리법인 등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으며, 우리법

상의 민사시효, 상사시효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기시효, 일반시효, 장기시효 등으로 구분하는 특징을 가진다.

4) 외국인투자자의 법적보장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외국인투자보장법 등으로 과실송금, 자국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내국인과 평등한 대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혜택, 불리한 법률변경으로부터의 보호, 사유화 참여 보장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5) 불완전한 법치주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법적용 등에 있어 아직까지 완전한 법치주의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실무상 재판의 공정성 및 집행 가능성 등에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투자 시 법적 리스크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원(法源)

- ①
- ②
- ③
- 1) 도입
- ④
- ⑤

우즈베키스탄 법규법(Закон О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⁷⁾은 법률의 우선순위에 대해 헌법, 법률, 의회명령(постановление палат Олий Мажлиса РУ), 대통령령(указы Президента), 내각령(Постановлени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У), 각부 및 각위원회명령(акты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ве

7) 우즈베키스탄에서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노르마찌브노-쁘라바보이 악트)”는 일정한 법령의 절차 및 형식에 의거 채택되고, 일반적으로 강제적인 국가의 규율로서 법령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를 의미한다.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노르마찌브노-쁘라바보이 악트)”는 우즈베키스탄 법률체계에서 가장 주요한 법원이 되고, 상호 우선순위를 가진다.

제 1 장 우즈베키스탄의 개요

⑥ домств), 조례 및 규칙(решение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 ласти на местах)으로 정하고 있다.

2) 헌 법⁸⁾

(가) 지 위

우즈베키스탄에서 헌법은 최고의 법원성을 지니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없다(헌법 제15조 및 제16조).

(나) 구 성

우즈베키스탄 헌법은 전문과 6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편 기본원칙(제1조 내지 제17조), 제2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헌법 제18조 내지 제52조), 제3편 사회와 개인(헌법 제53조 내지 제 67조), 제4편 행정-영토 체제(헌법 제68조 내지 제75조), 제5편 통치구조(헌법 제76조 내지 제126조), 제6편 헌법개정절차(헌법 제127조 내지 제128조)로 구성되어 있다.⁹⁾

8) 우즈베키스탄 헌법은 1992년 12월 8일 우즈베키스탄 최고 소비에트(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제11차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9) 제1편은 제1장 국가주권(헌법 제1조 내지 제6조), 제2장 인간과 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헌법 제7조 내지 제14조), 제3장 헌법 및 법률의 최고성(헌법 제15조 내지 제16조), 제4장 대외정책(헌법 제17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2편은 제5장 총론(헌법 제18조 내지 제20조), 제6장 국적(헌법 제21조 내지 제23조), 제7장 개인의 권리와 자유(헌법 제24조 내지 제31조), 제8장 정치적 권리(헌법 제32조 내지 제35조), 제9장 경제 및 사회적 권리(헌법 제36조 내지 제42조), 제10장 인간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헌법 제43조 내지 제46조), 제11장 시민의 의무(헌법 제47조 내지 제5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편은 제12장 사회의 경제적 기초(헌법 제53조 내지 제55조), 제13장 사회단체 (헌법 제56조 내지 제62조), 제14장 가족(헌법 제63조 내지 제66조), 제15장 언론매체(헌법 제67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4편은 제16장 행정-영토 체제(헌법 제68조 내지 제69조), 제17장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헌법 제70조 내지 제7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편은 제18장 올리 마쉴리스(의회) (헌법 제76조 내지 제 88조), 제19장 대통령(헌법 제89조 내지 제97조), 제20장 내각 (헌법 제98조), 제21장 지방국가권력의 기반(헌법 제99조 내지 제105조), 제22장 법원제도(헌법 제106조 내지 제116조), 제23장 선거제도(헌법 제117조), 제24장 검찰(헌법 제118조 내지 제

3) 법률(Закон)

(가) 의 의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중요하고 안정적인 사회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의회(Олий Мажлис) 또는 국민투표로 채택되는 법률¹⁰⁾이다. 법률은 우즈베키스탄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법률의 구분

우즈베키스탄에서 법률은 헌법법률¹¹⁾(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코드(кодексы)와 일반 법률(некодификационные законы)로 구분된다.

헌법법률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문제에 대해 헌법적 법률이 채택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헌법법률에 대한 예로는 우즈베키스탄 국가독립근거에 대한 헌법법률(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

121조), 제25장 재무, 통화, 예산(헌법 제122조 내지 제124조), 제26장 국방 및 안보(헌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6편은 헌법개정(헌법 제127조 내지 제128조)로 구성되어 있다. ①

10)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9조는 국가²⁾ 및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투표에 부³⁾질 수 있다고 규정⁴⁾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국민투표법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사회적, 국가⁵⁾적으로 중요한 문제의 결정을 위해 법률 및 기타 결정의 채택을 위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경우, 동법률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폐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민투표법 제1조). 다만, 동법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닌 문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영토 완전성의 변경의 문제, 우즈베키스탄 국가예산 및 세금 문제, 사면, 특사의 문제, 사회질서, 주민의 건강 및 안보의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의 수립의 문제, 우즈베키스탄이 비준한 국제조약상의 의무이행에 관련한 문제, 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의 문제(국민투표법 제2조).

11) 헌법법률은 우리의 헌법부속법률에 해당한다.

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У), 우즈베키스탄 하원에 대한 헌법법률(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палате Олий Мажлиса РУ), 우즈베키스탄 상원에 대한 헌법법률(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Сенате Олий Мажлиса РУ), 국민투표결과 및 통치기구조직원칙에 대한 헌법법률(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итогах референдума и основных принципах орга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등이 있다.

헌법법률은 일반 법률과 달리 상 하의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다.

코드(code)는 사회생활에서 일정분야의 중요한 관계를 총체적이고 일정하게 조정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즉, 코드는 재산관계, 노동관계, 범죄 등과 같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규율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민법(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민사소송법(Гражданско-процессуальный Кодекс), 형법(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형사소송법(Уголовно-процессуальный Кодекс), 가족법(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관세법(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세법(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등이 코드 형태로 되어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 법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코드화 되지 않은 일반 법률이다.

(다) 법률의 채택

법률은 하원이 채택하고, 상원이 승인하며, 대통령의 서명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공식 매체에 공포 후 효력을 발생한다.

하원이 채택한 법률안은 10일 이내에 승인을 위해 상원에 이송을 하고, 상원에서 승인 후 10일 이내에 서명 및 공포를 위해 대통령에

게 이송하고,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서명 및 공포한다(헌법 제84조).

법률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법규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ах)”은 해당 법률에 달리 정한 정함이 없는 경우 공포한 때로부터 10일 경과 후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규에 관한 법률 제26조).

한편, 상원이 승인을 거부한 경우, 법률안을 하원으로 환부하고, 이 경우, 하원은 그 법률안을 재의에 회부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함으로써, 그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하원은 확정된 법률을 서명 및 공포를 위해 대통령에게 이송한다. 대통령은 이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의회에서 하원 및 상원의원 각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이 서명하여야 하고 14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헌법 제84조).

4) 의회명령(постановление палат Олий Мажлиса РУ)

우즈베키스탄 “법규법(Закон О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ах)” 제 9조는 우즈베키스탄 의회는 헌법 및 법률의 이행과 관련하여 명령(постановление)을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82조는 하원과 상원은 각 권한사항에 대해 명령을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하원에 관한 헌법적 법률과 상원에 관한 헌법적 법률은 각 권한에 관한 문제 뿐 아니라 내부 활동 조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명령 형태로 법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대통령령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 헌법 및 법률의 이행을 이행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효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법규에 관한 법률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헌법 및 법률의 이행을 위해 명령(указ) 형태로 법규를 채택할 권한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동법 제10조). 또한,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94조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헌법 및 법률의 이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효력을 발생하는 명령, 처분¹²⁾ 등을 발할 수 있다고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의 특징 중 하나는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입법되어야 할 문제들이 상당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율되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입법권을 축소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6) 내각령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이행을 이행하고, 경제, 사회-문화, 국방 등의 실무적인 문제의 결정을 위해 내각령¹³⁾을 채택한다.

7) 각부, 각국가위원회 및 각청령

우즈베키스탄의 각부, 각국가위원회는 자신들의 권한범위 내에서 법규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2)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및 포고는 “указ”, “постановление” 및 “распоряжение”의 형식을 취한다.

13) 우즈베키스탄 내각령은 “постановление” 및 “распоряжение”의 형식을 취한다.

8) 조례 및 규칙

우즈베키스탄 지방국가기과법에 의거 지방의회 및 구청장 및 시장은 법규¹⁴⁾를 제정할 수 있다(동법 제6조).

9) 국제조약

우즈베키스탄이 체결하고 비준한 국제조약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중요한 법원 중 하나가 된다(우즈베키스탄 국제조약법 제26조).¹⁵⁾

- ① 한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아래와 같다:
- ②
- ③ 한-우즈벡 정부간 투자의 장려 및 상호보호 협정(1992. 6. 17.);
- ④ 한-우즈벡 정부간 무역협정(1992. 6. 17.);
- ⑤ 한-우즈벡 정부간 과학-기술협력협정(1992. 6. 17.);
- ⑥ 한-우즈벡 정부간 항공통신협정(1994. 6. 6.);
- ⑦ 한-우즈벡 정부간 이중과세, 소득세 및 자본세 회피 방지협정
- ⑧ (1998. 2. 11.);
- 한-우즈벡 정부간 세관업무상호공조협정(1999. 10. 5.);
- ⑨ 한-우즈벡 정부간 한국의료직원지위협정(2000. 7. 18.);
- 한-우즈벡 정부간 범죄자 인도 및 자국법의 범위에서 상호평등에 기초한 형사사건 법적 원조에 관한 협정(2001. 9. 18.);
- 한-우즈벡 검찰 협력 협정(2003. 11. 6.);

14) 우즈베키스탄의 지방의회 및 단체장은 “решение(결정)” 형태로 법규를 채택한다.

15) 러시아 헌법 제15조 제4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율 및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러시아연방의 법체계 구성부분이다. 러시아연방의 법률이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다르게 규율되어 있는 경우, 국제조약의 규율이 우선한다’고 밝힘으로써, 러시아연방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율을 러시아연방의 법원으로 인정하고, 국내법에 대한 국제조약의 우위를 헌법상 명문화하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은 동 국제조약의 지위에 대해 헌법상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⑩

한-우즈벡 정부간 사회보장협정(2005. 5. 10.).

10) 판 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판례에 관해 러시아 학자들 사이에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가^① 있다.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주장의 근거로는 판례가 제정법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사법적 자의를 허용할 가능성도 있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 사안의 개별적인 특징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판결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런 반대 견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판례는 법원의 판례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판례에 대한 태도에 대해 러시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11) 관습법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관습법의 법원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찾을 수 없지만, 소비에트시대부터 현재 러시아에 까지 관습법을 국가가 관습으로 인정하고, 그 관습을 보호할 때 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험으로 볼 때,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관습법은 국가가 관습으로 인정하고, 그 관습을 보호할 때 관습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2 장 정부조직과 관련 집행법률¹⁶⁾

1. 개 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즈베키스탄의 법률의 집행, 우즈베키스탄 국회(Олий Мажлиса)의 결정, 대통령 명령과 처분의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하고 있다.

내각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국회에 대하여 자신의 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¹⁷⁾

2. 각부의 기능 및 과제와 관련 집행법률

(1) 내무부

1) 기능 및 과제

우즈베키스탄 내무부는 인권과 시민의 권리 보장, 법질서의 확립, 사회 안전 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6)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부조직은 각부(министерство), 각국가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및 각청(агентство)로 구분하고 있으나, 명확히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운영공화국기구시스템 완성에 관한 대통령령” 제3358호에서 국가운영공화국기구에 각부, 각국가위원회 및 각처를 포함시키고 있다. 차이점은 각부의 수장은 장관(министр)이고, 각국가위원회 및 각처의 수장은 위원장(председатель)이라고 부른다. 또한, 몇몇 국가위원회 및 처의 위원장은 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처 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다만, 각부, 각국가위원회 및 각처간의 서열상 차이는 없다. 한편,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агентство”는 영어의 “agency”에 해당하는바, 이하에서는 “청(廳)”으로 번역하도록 한다.

17) 우즈베키스탄 내각에 관한 법률 제1조.

2) 관련 집행법률

- 국적법(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У)¹⁸⁾;
대기환경보호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атмосферного воздуха).¹⁹⁾

(2) 외무부

1) 기능 및 과제

외무부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기본임무는 국가주권의 원칙을 실현시키며, 우즈베키스탄 대외 정책노선을 이행하며, 외국과 국제단체에서 국익과 재외국민의 이익의 보호이다.

2) 관련 집행법률

국적법(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У).

(3) 법무부

1) 기능 및 과제

- 법령의 제정 및 정비;
- 사회단체의 정관 등록 및 감독;
- 외국투자기업의 등록;
- 비정부비영리단체의 등록;
- 외국법원에서 우즈베키스탄이 당사자가 되는 분쟁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이익 보호;

18)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적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 내무부 및 외무부가 담당한다.

19) 우즈베키스탄에서 대기공기의 보호를 위한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권한을 갖는 기관은 내무부, 환경부 및 국가자연보호위원회이다.

2. 각부의 기능 및 과제와 관련 집행법률

-
- 공증소, 변호사협회, 작스(ЗАГС) 등의 감독 및 효율성 제고;
- 변호사 활동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공증소 활동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 2) 관련 집행법률
-
- 공증법(Закон О нотариате)²⁰;
- 세무사법(Закон О налоговом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и)²¹;
- 법규법(Закон О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ах)
비정부비영리단체법(Закон О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²²)

(4) 대외경제부

-
- 1) 기능 및 과제
-
- 대외경제활동의 조정과 관련한 업무 담당 및 내각에 업무활동
- 보고;
- 대외경제분야의 단일국정수행의 보장;
- 수출장려;
- 외국투자의 유치;
- 대외무역의 자유화 증진;
- 대외무역관계의 확대 의무;
- 세계 자본시장 및 서비스시장의 마케팅 조사 수행;
- 대외 및 대내 시장의 수요 조사;

20) 법무부는 공증법에 의거 국가공증소 및 개인공증소 목록을 작성하고, 공증업무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21) 법무부는 세무사법에 의거 세무사의 등록을 수행한다.

22) 법무부는 비정부비영리단체법에 의거 비정부비영리단체, 국제비정부비영리단체, 국제 및 외국의 비정부비영리단체의 연락사무소 및 지사의 등록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정부조직과 관련 집행법률

-
- 외국파트너와 무역-경제관계의 확립;
국가의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국영기업의 수출입계약의 등록 등
- 2) 관련 집행법률
- 대외경제활동법(Зако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수출통제법(Закон Об экспортном контроле).

(5) 경제부

-
- 1) 기능 및 과제
- 국가 장기발전전략 및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
- 균형 있는 사회-경제정책의 수행;
- 중-단기사회경제발전 전망 및 프로그램 개발
- 자연자원, 과학-기술자원, 노동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 경제 및 사회수준의 분석;
- 거시경제지표의 분석;
- 사회-경제발전발향의 결정;
- 경제 불균형의 제거;
- 연례 및 분기별 경제발전상황 보고서의 작성;
- 대통령 및 정부가 채택한 경제발전 및 경제개혁 결의 이행의 감독 등.

2) 관련 집행법률

관련 집행법률 불확정²³⁾

23) 우즈베키스탄 법률 중에는 해당 법률에 권한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령에도 권한기관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경우는 “관련법률 불확정”이라고 표시하도록 한다.

(6) 재무부

- 1) 기능 및 과제
- 재정, 반독점, 가격 정책 등의 수행;
- 재무 관련 단체 및 가격결정 단체의 감독;
- 국가예산안의 준비 및 예산안 이행의 보장;
- 국가예산이행에 대한 보고서 작성;
-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감독 등 국가재무통제;
-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인의 보험활동에 관한 라이선스 부여;
- 회계사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 복권 관련단체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등.
- 2) 관련 집행법률
- 예산시스템법(Закон О бюджетной системе)²⁴;
- 외환관리법(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²⁵

(7) 노동사회보장부

- 1) 기능 및 과제
- 노동, 고용, 사회보장 분야를 관장하는 중앙기구이고 내각의 직속기구;
- 연금수령자, 장애인, 노령자, 저소득층 가정의 사회보장을 위한 대책수립

24) 동법에 의거 국가예산안을 마련하고, 국가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통제, 지방예산의 집행을 수행한다.

25) 동법에 의거 재무부는 중앙은행 및 국가조세위원회와 함께 외환관리를 담당한다.

제 2 장 정부조직과 관련 집행법률

-
- 사회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의 개발 및 실현;
- 이민 상황의 분석;
- 해외노동이민 단체에 대한 제안의 개발;
-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의 노동활동에 대한 연구;
- 외국인노동자의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활동을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에게 초청권 및 노동 확인서의 발급;
- 노동시장 인프라 완전성 보장.

2) 관련 집행법률

주민고용법(Закон О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²⁶⁾

(8) 농업수산부

-
- 1) 기능 및 과제
-
- 품종개량, 종자증식, 수의학, 식물의 검역, 육우, 조류 및 생선제품
- 이 안전 등과 관련된 정책의 수행;
- 관개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저수원칙에 기해 수자원의 관리;
- 수자원 이용 원칙의 확립;
- 국가수자원시스템의 이용 및 현대화;
- 산림자원의 이용, 보호 및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수의사 활동에 관한 라이선스 발급 등.

2) 관련 집행법률

자연보호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природы);

산림법(Закон О лесе);

26) 동법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용 및 고용의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을 실현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법과 함께 고용관련 가장 중요한 법률이다.

2. 각부의 기능 및 과제와 관련 집행법률

-
- 종자증식법(Закон О семеноводстве);
- 수자원이용법(Закон О воде и водопользовании);
식물보호 및 이용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растительного мира).

(9) 비상사태부

- 1) 기능 및 과제
시민보호와 사고, 재앙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의 경고, 수습에 관한 업무의 감독 및 조정.
-
- 2) 관련 집행법률
시민보호법(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кой защите);
비상사태 시 시민 및 영토보호법(Закон О защите населения и территорий от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природного и техног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10) 고등중등특별교육부

-
- 1) 기능 및 과제
고등 및 중등특별교육의 감독;
고등 및 중등특별교육 분야에서 단일정책의 수행.
-
- 2) 관련 집행법률
관련 집행법률 불확정

(11) 국민교육부

- 1) 기능 및 과제
- 국민교육 감독;
- 의무보통교육, 중등전문교육, 직업교육의 보장;
- 교육기관의 감독 수행 및 조정.
- 2) 관련 집행법률
- 관련 집행법률 불확정

(12) 문화체육부

- 1) 기능 및 과제
- 극장, 박물관 등의 발전의 보장;
- 문화유적지 복원 등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지원;
- 문화재의 임시 반출에 관한 결정;
- 문화재의 반입, 반출, 임시 반입, 반출에 관한 등록;
- 반출 및 임시 반출이 신청된 문화재의 검사 및 임시 반출 후 반입된 문화재의 검사;
- 문화재의 반출 및 임시반출권 증명서의 발급 등.

2) 관련 집행법률

문화재반-출입법(Закон О выводе и ввозе культурных ценностей);

문화재의 보전 및 이용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объектов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13) 국방부

- 1) 기능 및 과제

국방과 관련된 정책의 수행 등.

- 2) 관련 집행법률

국경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е РУ).

(14) 보건부

- 1) 기능 및 과제

- 주민 건강증진 정책의 수행;

- 예방 의학의 발전;

- 건강한 삶의 확산;

- 질병 예방 대책의 수립;

- 의료 기관 및 개인의료 기관의 주민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감독;

- 의료 활동 라이선스 발급;

- 약학 분야 라이선스 발급 등.

- 2) 관련 집행법률

시민건강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대기보호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атмосферного воздуха);

자연보호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природы);

표준화법(Зако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3. 각 국가위원회의 기능 및 과제와 관련 집행법률

(1) 국가재산관리위원회

- 1) 기능 및 과제
-
- 경제개혁 및 사유화의 가속화;
- 국유재산의 관리;
- 기업의 사유화 후 모니터링;
- 시장 인프라의 구축;
- 정부 각 부처,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업 및 기관과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국유재산목록의 작성;
- 국유자산매각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및 보장 등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
- 국유자산의 매각수행;
- 국유자산매각시 최초가격 승인;
- 사유화금지목록의 작성;
- 주식거래소, 평가회사 및 평가사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등.

2) 관련 집행법률

사유화법(Закон О разгосударствении и приватизации)

•

(2) 국가통계위원회

1) 기능 및 과제

학문적 방법과 국제기준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기능을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

3. 각 국가위원회의 기능 및 과제와 관련 집행법률

-
- 국가통계보고개발 및 승인;
사회-경제과정의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통계지표의 정보시스템
구축 등.

- 2) 관련 집행법률

국가통계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е).

(3) 국가반독점경쟁발전위원회

-
- 1) 기능 및 과제
-
- 경쟁발전;
- 독점규제;
- 부실기업의 조직개편;
- 경쟁 활동의 보장;
- 소비자권리보호;
- 광고활동 보장 등.

- 2) 관련 집행법률

-
- 상품시장의 경쟁 및 독점제한법(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 자연독점법(Закон О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ях);
- 소비자보호법(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광고법(Закон О рекламе).

(4) 국가조세위원회

- 1) 기능 및 과제
- 조세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
- 조세 납부여부 감독;
- 예산외 연금기금에 대한 의무납입 여부 감독;
-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도움 제공;
- 조세정책의 실현에 직접 참여;
- 조세관련법규위반에 대한 조사, 경고 및 시정 등.
- 2) 관련 집행법률

국가세무소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е);
외환관리법(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5) 국가관세위원회

- 1) 기능 및 과제
- 국가의 경제안보의 범위 내에서 경제이익의 보호 및 보장;
- 국가 관세정책수립에 참여 및 실현;
- 관세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
- 관세의 징수;
- 보세창고(таможенный склад)의 승인;
- 면세점의 승인 등.

3. 각 국가위원회의 기능 및 과제와 관련 집행법률

2) 관련 집행법률

-
- 국가세관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е);
- 문화재 반출입법(Закон О вывозе и ввозе культурных ценностей);
- 외환관리법(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6) 국가환경보호위원회

-
- 1) 기능 및 과제
-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
- 자연자원의 이용 및 재생;
-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정책의 개발 및 이행;
- 환경평가의 수행;
-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 이용에 관한 행정법규 위반과 관련된 물질의 검사 및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벌 및 사법당국에 검토 의뢰 등.
-
- 2) 관련 집행법률
- 대기환경보호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атмосферного воздуха);
- 자연보호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природы);
- 산림법(Закон О лесе);
- 토지보호법(Закон Об охраняемых природ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 폐기물법(Закон Об отходах);
- 지하자원법(Закон Об недрах);
- 식물보호 및 이용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растительного мира);

제 2 장 정부조직과 관련 집행법률

- 동물보호 및 이용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животного мира);
- 표준화법(Зако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7)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

- 1) 기능 및 과제
- 내각에 업무활동의 보고;
- 광물자원의 지질연구;
- 광물자원지의 예상 및 발견;
- 광물자원(탄화수소 제외) 개발의 타당성 평가;
- 광물자원 국가기금의 관리;
- 지질연구와 관련된 업무의 조율;
- 지질연구목적의 자원산지이용권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등.
- 2) 관련 집행법률
- 수자원법(Закон О воде и водопользовании);
- 하층토법(Закон О недрах).

(8) 국가건축건설위원회

- 1) 기능 및 과제
- 도시건설법규의 작성 및 승인;
- 설계의 국가검수와 관련한 방안 작성 및 승인;
- 도시건설관련 기타 법령의 작성 및 승인;
- 국가 건축-건설감독의 수행;
- 도시건설규범, 국가표준, 건설작업기술 및 건축자재수준 준수 여부 감독;

4. 각청의 기능 및 과제와 관련 집행법률

-
- 설계의 국가검수;
- 건축표준화업무수행 및 건축자재인증화의 수행;
설계라이센스, 감리라이센스, 고층 산업알피니즘(промышленный альпинизм) 작업수행에 관한 라이선스 발급 등.
- 2) 관련 집행법률
- 도시건설법(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표준화법(Зако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9) 국가토지자원, 측량, 토지대장위원회

-
- 1) 기능 및 과제
- 국가토지대장(카다스트라)의 작성;
- 국가건물 및 시설물대장(카다스트라)의 작성;
-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관련 계약의 등록.
- 2) 관련 집행법률
- 국가토지대장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земельном кадастре);
- 자연보호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природы).

4. 각청의 기능 및 과제와 관련 집행법률

-
- (1) 언론정보청
- 1) 기능 및 과제
- 언론, 정보교환, 출판, 정기출판물의 보급;
- 출판기관, 언론기관, 광고기관의 단일목록작성 및 등록;

제 2 장 정부조직과 관련 집행법률

- 언론, 출판, TV방송, 라디오 방송 분야에서 현행법령의 준수여부
- 모니터링;
- 법령, 등록 및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감독 및 경고;
- 등록 및 라이선스 효력의 정지 및 중단;
- 출판활동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등.

2) 관련 집행법률

관련 집행법률 불특정

(2) 정보통신청

- 1) 기능 및 과제
- 통신, 정보화, 무선주파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조정기관;
- 컴퓨터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협의회의 실무기관의 역할 수행;
- 통신 및 정보화 기술과 관련된 기술적 장비에 대한 인증서 발급;
- 무선주파장비 이용의 허가서 발급;
- 국내전화, 국제전화 및 우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전략적 우선순위의 실현;
- 통신, 인터넷, TV 등 자료전송망의 확산;
- 우편통신 시스템 활동의 감독;
- 전화, 자료전송망 발전의 조정;
- 해당 분야의 경쟁 환경의 조성;
- 해당 활동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등.

한편, 정보통신청의 라이선스 발급분야는 아래와 같다:

국내전화망의 설계, 건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라이선스;
국제전화망의 설계, 건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라이선스;

4. 각청의 기능 및 과제와 관련 집행법률

-
- 이동무선통신의 설계, 건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라이선스;
- 개인무선호출기의 설계, 건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라이선스;
- 자료전송(인터넷 등)의 설계, 건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라이선스;
- TV, 라디오 방송중계의 설계, 건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라이선스.

• 2) 관련 집행법률

• 통신법(Закон О связи);

• 무선주파대역법(Закон О радиочастотном спектре).

(3) 표준인증청

• 1) 기능 및 과제

- 표준화, 도량화, 인증화 담당;
- 국가별, 산업별, 행정구역별 표준화의 등록 및 변경;
- 기업의 제품 표준화 및 기술조건 등록 및 변경;
- 생산제품, 수입제품의 인증화 작업;
- 인증화 제품국가목록작성;
- 측량수단의 생산, 판매 및 대여에 관한 라이선스 부여 등.

• 2) 관련 집행법률

• 제품 및 서비스 인증화법(Закон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 표준화법(Зако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 측량법(Закон О метрологии).

(4) 공공서비스청

- 1) 기능 및 과제
- 공공서비스 분야의 업무 결정권;
내각에 활동내용 보고 의무.
- 2) 관련 집행법률
폐기물법(Закон Об отходах).

(5) 자동차하천운송청

- 1) 기능 및 과제
자동차 및 하천운송 서비스시장의 발전 및 안전 보장;
자동차 및 하천운송 분야의 구조적 및 제도적 문제의 해결 등.
- 2) 관련 집행법률
도로교통안전법(Закон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6) 저작권청

- 1) 기능 및 과제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저작권, 인접저작권자 및 권리승계인의 권리 보호;
침해된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의 침해 방지 및 복구;
문학작품, 예술작품, 작품의 저작자의 등록;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을 사용하는 법인 및 자연인의 목록 작성;

4. 각청의 기능 및 과제와 관련 집행법률

-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발전.
- 2) 관련 집행법률
관련 집행법률 불특정

(7) 문서보관청
- 1) 기능 및 과제
내각 산하 기관으로서 문서업무를 관장
- 2) 관련 집행법률
- 문화유산의 보호 및 이용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объектов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문서법(Закон Об архивах).

제 3 장 주요 관련 집행법률

1. 도입

본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각부, 각국가위원회 및 각청의 집행법률 중 실무상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실무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을 선택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 소개한다.

2. 주요 관련 집행 법률의 검토

(1) 외환관리법(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1) 입법취지

본법의 입법취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외환거래의 규율하기 위함이다(동법 제1조).

2) 주요 내용

- (가) 외환관리기관 및 권한
- 우즈베키스탄에서 외환관리기관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고, 그 주요권한은 아래와 같다:
- 우즈베키스탄에서 외환의 유통절차의 결정;
환율의 결정;
우즈베키스탄에서 비거주자의 스텔²⁷⁾계좌의 개설 및 운영절차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외환계좌 개설 및 운영절차 결정;
거주자-법인의 해외계좌 개설절차 결정;

27) 우즈베키스탄 화폐단위이다.

제 3 장 주요 관련 집행법률

-
-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환전절차에 결정;
- 은행에 외환업무수행에 관한 라이선스 발급 및 취소, 감독;
- 자본이동과 관련한 개별적인 외환업무의 수행절차 결정;
- 시중은행의 외환매수액과 매입액의 차액의 결정²⁸⁾;
- 거주자의 외환매매대금의 의무매각의 액수 및 절차 결정²⁹⁾;
- 외환통제 관련 법규의 채택 등(동법 제10조).

(나) 외환거래의 제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경제안보에 위험한 상황의 발생 시 외환 거래를 일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다) 환 율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외환매매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결정한 환율로 이루어진다.³⁰⁾

(라) 우즈베키스탄 거주자의 계좌개설

거주자들은 우즈베키스탄 은행에서 중앙은행이 정한 절차에 의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주자-법인의 경우 외환은 외환계좌에서 보관되고, 외환을 사용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정한 절차에 의거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회사가 우즈베키스탄의 현지법인 또는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외화로 송금을 하면, 외환계좌에서 보관이 되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숨화를 사용해야 할 경우, 외환계좌에 있는 외화로 매매일 당시의 중앙은행의 고시환율에 따라 숨화를 매입하게 된다.

28) 시중은행의 외환매수액과 매입액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규제 한다.

29)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출대금의 경우, 수출대금의 50%를 환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 우즈베키스탄에서 환율을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는바, 외환사정이 어려울 때는 은행환율과 암시장 환율이 큰 차이가 발생한다. 2009. 4. 현재 중앙은행환율은 달러당 1,500숨이고, 암시장 환율은 달러당 1,800숨이다.

한편, 물품(용역, 서비스 포함)의 수출대금으로 거주자-법인이 취득한 외화는 의무적으로 권한을 가진 은행계좌의 거주자-법인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거주자-법인의 경우, 수출대금으로 취득한 외화의 50%는 의무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거주자-법인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정할 절차에 의거 외국에서 숨화 및 외환계좌를 개설 및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마) 우즈베키스탄 비거주자의 계좌개설

우즈베키스탄에 임시 거주하는 비거주자-자연인, 외교관, 국제단체 및 그 지사, 영리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대표사무소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외화 및 숨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동법 제17조).

(바) 우즈베키스탄에서 지급 및 결제 화폐

-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지급 및 결제는 숨화로 되어야 한다(일부 주요한 내용만 소개함);
 -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 대출금의 회수 및 반환;
 - 외환업무 관련 은행수수료;
 - 외환으로 표시된 은행의 보장금의 지급;
 -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한 법인자본금의 납입;
 - 이자를 지불하는 외화예금의 납입;
 -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지급;
 -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한 유가증권의 매매;
 - 기타 법령이 정한 경우(동법 제18조).

(사) 외환 및 숨화의 반입 및 반출

자연인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외환을 반입하는데 제한이 없다. 자연인-거주자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외환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자

연인-거주자가 법령이 정한 범위를 초과한 외환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또는 권한을 가진 은행이 발행한 외환반출 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연인-비거주자는 외환을 세관신고서에 신고된 범위 내에서 반출이 가능하고, 세관신고서에 신고된 범위를 초과한 외환의 반출 시에는 중앙은행 및 권한을 가진 은행이 발행한 외환반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및 권한을 가진 은행을 제외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법인은 외환 및 습화의 반입과 반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외환 및 습화의 반입 및 반출과 관련하여 권한은행도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동법 제19조).

(아) 외환관리기관

우즈베키스탄에서 외환관리기관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재무부, 국가세무위원회 및 국가관세위원회이다(동법 제20조).

(자) 과실송금

우즈베키스탄 외국인투자보장법은 자유로운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중앙은행의 외환통제로 인하여 과실송금상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즉,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투자자가 과실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승인한 형식에 따른 과실송금 신청서, 투자계약서, 이익배당확인서류(예를 들어, 사원총회 의사록 등), 회계법인 및 세무의 확인서 사본, 과실송금을 위한 현지화폐(습)의 입금확인서, 세무서의 세금 등의 납입확인서 등을 거래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 과실송금을 위한 필요서류를 접수받은

거래은행은 전문가그룹(экспертная группа)을 소집하고, 전문가그룹에서 과실송금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을 내린 경우, 외환매입신청서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에 전달한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태환 등의 문제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접수받은 외환매입신청서를 검토한 후 외환매각을 결정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법상 거래은행이 중앙은행에 외환매입신청을 할 경우, 중앙은행이 외환매각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거래은행이 중앙은행에 외환매입신청을 할 경우, 중앙은행은 외환 부족 등의 이유로 외환매각결정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과실송금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태환리스크 등이 포함된 정치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현지은행과 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태환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사유화법(Закон О разгосударствении и приватизации)

1) 입법취지

1991년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회사 및 공장들은 국유로 남게 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회사들이 신규 투자 없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었고, 국가는 운영이 부실한 국영 기업을 사유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동법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효율적이고, 친시장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2) 주요 내용

- (가) 국유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
- 우즈베키스탄 시민 및 외국;
- 개인기업;
- 외국법인 및 외국인.

동규정에 의거 외국법인 및 외국인도 우즈베키스탄 사유화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동법 제5조).

(나) 사유화 대상

국가소유의 기업 및 부동산³¹⁾ 등이 사유화의 대상이다(동법 제4조 제1항).

- (다) 사유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산
- 토지;
- 지하자원;
- 문화재;
- 군사시설물;
- 우라늄 생산 기업;
- 기타 법률이 정한 분야의 자산(동법 제4조 제2항).

(라) 사유화의 형태 및 조건

국영기업을 사기업으로의 전환;

국가재산을 경매 등을 통해 개인기업 및 개인에게 매각(동법 제6조).

31)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직까지 토지의 사유화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유화대상인 호텔 또는 상가를 매입한 경우, 호텔 또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되고, 부작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되고,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로 등재가 되고, 토지등기부등본에는 사용권자 또는 임차권자로 등재가 된다. 즉, 우즈베키스탄은 건물과 토지의 이중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사유화 대상물 또는 사유화 대상물의 주식을 우즈베키스탄 내각 또는 담당기관이 정한 절차에 의거 취득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2항).

(마) 가격

사유화 대상물의 매각가격은 사유화 시기의 시장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동법 제9조).

(바) 소유권의 이전

매수인이 사유화 물건을 매수한 경우, 국가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증서(ордер, удостоверяющий право собственности)를 부여하게 된다(동법 제15조 제1항).

한편,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소유권증서는 최초 납입금(первыйвыкупной взнос)의 납입 후 교부된다. 다만, 이 경우 완납 시까지 국가는 동재산에 대해 재산의 매매 또는 무상양도 등의 금지를 포함한 재산의 처분권(право распоряжения)을 제한할 수 있다.

실무상, 사유화대상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통상 수년에 걸쳐 회사 또는 사유화 매물의 정상화를 위해 일정금액의 투자의무가 부여되는데, 투자의무의 이행이전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소유권증서는 처분권은 수반되지 않은 소유권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사) 의무

사유화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일정기간동안 상호의무 및 사유화대상의 활동 조건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제 3 장 주요 관련 집행법률

- 일정기간 동안 사유화 대상 기업의 목적(профиль)³²⁾ 및 생산량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
- 직원 수의 유지 및 변경;
- 일정한 소비자에 제품의 납품; 노동조건 개선 및 환경보호 등의 대책 수립 등.

통상 이러한 조건들은 사유화시 사유화대상물의 가격 발표와 함께 제시가 된다(동법 제18조).

(3) 하층토법(Закон О недрах)³³⁾

1) 입법취지

본법의 입법취지는 지하자원의 점유, 수익 및 처분 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함이고, 본법의 기본 과제는 소비자들의 지하자원사용과 보호, 환경보호 및 자원이행시 작업수행의 안전보장 및 지하자원사용자, 개인, 사회 및 국가의 이익과 권리보호 만족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이용의 보장이다(동법 제1조).

2) 주요 내용

(가) 하층토 및 지하자원(광물자원)의 소유권

우즈베키스탄에서 하층토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가진다(동법 제4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토지가 아직 사유화되지 않아서, 토지는 국가소유로 남아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사유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하층토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가 가진다.

32) 예를 들어, 사유화 대상 회사가 식료품 회사일 경우, 인수시 합의한 기간 동안은 식료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유지되어야 의미이다.

33) 우즈베키스탄의 “하층토법”은 우리나라의 “지하자원법”에 해당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채굴한 지하자원의 소유권은 국가, 기업 및 개인이 가질 수 있다.

한편, 광물자원의 개발과정에서 취득한 부차적인 광물에 대한 소유권은 지표내부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동안 가진다. 예를 들어, 금광을 개발하다가 부차적으로 채굴하거나 금의 정제 과정 등에서 발견된 광물자원의 소유권은 금광사용자가 가지게 된다.

(나) 하층토의 관리주체

우즈베키스탄에서 지하자원에 대한 관리는 우즈베키스탄 내각(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해당지방정부(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국가환경보호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по охране природы),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по геологии и минеральным ресурсам), 국가산업작업수행안전 및 광물자원감독국(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инспекция по надзору за безопасным ведением работ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горным деле и коммунально-бытовом секторе)이다.

(다) 하층토이용권의 등록

지질학적 연구, 광물자원의 채굴, 지하시설물의 건설 및 이용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층토이용권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하층토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동법 제11조).

(라) 광물자원산지의 국가리스트 작성

국가는 매장가능성 광물자원산지의 국가리스트를 작성한다. 국가리스트에는 지질-경제평가 및 개발조건, 자원의 매장량 및 매장가치를 기입한다.

국가리스트에 포함된 정보는 자원산지의 하층토사용권(право пользования участками недр)에 대한 경매 및 직접 협상을 통해 하층토 사용권을 제공할 시 반드시 참조되어야 한다.

국가리스트의 작성 절차 및 담당기관은 우즈베키스탄 내각이 정한다(동법 제13조).

(마) 사용자

하층토의 사용자는 법인 및 자연인이다(동법 제20조).

(바) 하층토의 사용기간

하층토의 사용기간은 임시사용(срочное пользование) 및 영구사용(бессрочное пользование)의 형태로 부여된다. 사용권의 기간은 하층토사용권을 등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동법 제22조).

임시사용권은 지질연구(최대 5년), 광물자원의 채굴(광물자원 산지개발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을 부여함) 등에 부여된다.

하층토 사용기간은 사용기간 종료 6월 이전에 사용자가 사용연장신청을 함으로써 연장될 수도 있다. 연장여부에 대한 결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다(동법 제23조).

한편, 영구사용권은 광물자원 채굴과 상관없는 지하시설의 건설 및 이용과 특별히 지질학적 보호가 요구되는 대상의 구성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제공된다(동법 제24조).

(사) 하층토 이용권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적 리스크를 조건으로 하는 지질조사, 광물자원의 채굴 등을 목적으로한 하층토 이용권의 발생 근거는 라이선스이다(동법 제26조).

즉, 자원개발을 위해 지질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경우에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라이선스는 일정한 경계 내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하층토의 사용권자의 권리를 입증해주고 하층토의 사용조건을 결정한다. 동시에 하층토사용에 관한 수개의 라이선스의 발급도 가능하다. 즉,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질조사를 위한 라이선스, 광물자원 채굴을 위한 라이선스를 각각 취득하여야 하나, 동시에 지질조사 및 광물자원 채굴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도 있다.

라이선스에는 ④라이선스권자에 대한 정보, 하층토⑤이용과 관련된 작업의 목적, 사용권이 부여된 하층토의 대략적인 면적(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параметры), 하층토의 사용기간 및 작업착수시기, 하층토의 이용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층토 지질연구에 자원을 조달하는 법인 및 개인은 탐사가 진행 중인 산지의 광물자원채굴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에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동법 제26조).

라이선스는 경매(публичные торги) 및 직접 협상의 결과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발급이 된다.

한편, 하층토이용권이 법인이 아닌 법인이 결합체(объединение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³⁴⁾에 부여된 경우, 라이선스는 법인의 결합체의 참여자 중 1인에게 부여된다. 이 경우 라이선스에는 동 법인이 법인결합체를 대신하여 라이선스를 부여받는다라는 사실 및 법인결합체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모든 법인들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이선스의 발급기

34) 실무상, 석유, 가스자원의 개발에는 대규모의 재원이 요구되는 바, 통상 여러 개의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석유, 가스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관은 국가지질자원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У по геологии и минеральным ресурсам)이다 (동법 제27조).

(아) 부차적 광물(горный отвод)

일반적으로 하층토에는 석유, 가스 등의 자원 이외의 다양한 광물들이 발견된다. 본법은 부차적 광물의 개발권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바, 광물자원채굴 라이선스에 따라 하층토지의 제한된 면적과 깊이에서 부차적 광물의 사용권을 부여한다. 다만, 부차적 광물의 채굴은 반드시 하층토사용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자) 하층토사용권의 양도

광물자원채굴 라이선스권자는 라이선스를 발급한 당국과 합의에 따라 하층토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은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동법 제30조).

- (차) 사용자의 권리
- 사용자의 주요한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라이선스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광물자원의 채굴과정에서 취득한 부차적인 광물자원의 이용;
 - 사용자가 개발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질 및 기타 정보, 채굴광물자원의 사용;
 - 광물자원과 관련된 기술 및 개발 계획 등의 변경;
 - 광물자원산지개발과정에서 채굴규격(표준)의 결정;
 - 추가적인 허가 없이도 부여받은 라이선스에 의거 부차적 광물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질연구의 수행;
 - 하층토의 사용과 관련된 개별업무 또는 복합 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과 계약체결;

- 광물자원의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때와 비교하여 증대한 상황의 변화로 광물자원개발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 때 하층토이용조건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령이 정한 권리.

(카)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 하토층의 목적에 맞는 사용;
 - 하토층의 사용 및 광물자원의 정제 업무 등에 있어 법규 준수;
 - 자원개발에 있어 기술적 요건 및 개발계획의 준수;
 - 자원개발 시 지질 및 광구측량술 관련 서류의 작성;
 - 채굴한 광물 및 잔존 광물의 수량 및 질에 대한 기록;
 - 채굴한 광물의 수량에 대한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제공;
 - 직원 및 자원산지 주민들의 안전보장 등(동법 제34조).

(타) 사용권의 제한, 중단 및 종료 사유

- 하토층사용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한, 중단 또는 조기에 종료된다:
 - 하토층의 사용과 관련되어 주민의 건강 및 생명의 위협 및 환경 오염의 위험 발생;
 - 사용자가 1년 동안 하토층의 사용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의 반복적인 미납;
 - 라이선스의 기본 요건의 위반.

하토층사용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료된다:

- 사용기간의 종료;
- 사용자의 반납;
- 사용권을 부여받은 법인의 해산 또는 개인이 사업 활동 중단.

사용권의 제한, 중단 및 종료 절차는 우즈베키스탄 내각이 정한다(동법 제34조).

(파) 기 타

본법은 외국인투자자 권리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법인 및 자연인과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다. 본법은 우즈베키스탄 생산물분배협정법 이후 채택이 되었고, 본법과 생산물분배협정법은 석유, 가스 등 자원 개발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이다.

(4) 세무서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е)

1) 입법취지

동법의 입법취지는 세무기관의 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을 확정하기 위함이다. 세무기관은 조세의 완전한 징수를 목적으로 설립된다(동법 제1조).

2) 주요내용

(가) 세무기관(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ы)

세무기관은 우즈베키스탄 국가세무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налоговый комитет РУ),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주 및 타시켄트시 국가세무국(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налоговые управления)과 구, 시 국가세무서(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налоговые инспекции)가 있다(동법 제3조).

(나) 세무기관의 기본 과제

세무기관의 기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조세의 정확한 납부 등 조세관련법률의 준수여부 감독;

- 우즈베키스탄 단일납세자코드(Единый реестр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ых номеров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ов РУ);
-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도움제공;
- 조세정책에 참여;
- 조세위반의 발견 및 경고 등(동법 제4조).

(다) 세무기관의 권한

- 세무기관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의 재무관련 서류, 각종 계약서 등을 조사할 권리;
 - 무역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수출대금을 제때에 은행구좌에 납입하였는지 여부;
 - 납세자를 상대로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압류를 위한 소제기;
 - 조세채무 강제압류 등(동법 제6조).

동법에 의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세채무의 강제압류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세무기관의 세무조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세무조사 결과 불법행위 등이 발견되면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추방당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라) 세무기관과 다른 기관 및 단체 간의 상호협력

국가세무기관은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 및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당국, 재무기관 및 은행 들은 필요한 정보를 세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동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납세자의 은행 관련 정보를 은행이 세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동법에 의거 은행은 세

•무기관에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 경제주체의 결제 계좌 등의 개설은 국가세무기관이 발행한 확인서의 제출 후 가능하고, 동세무기관에 다음날 이전에 해당계좌의 개설에 대해 통보;
- 경제주체가 조세채무 등을 불이행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제주체의 결제계좌 등을 폐쇄;
- 미납 조세채무, 과징금 등 세무기관의 집행서류에 의거 노동관계 문제, 부양료, 저작권료, 생명 및 건강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압류명령의 무조건이행;
- 납세자의 계좌에 현금이 있는 경우 조세 및 과징금을 국고에 납입; 조세기관의 서면 요청에 의해 계좌인출 중지. 다만, 계좌인출중지는 소득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경우 및 테러지원을 위한 금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을 통해야 함;
-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거 담당세무공무원들은 법인 및 개인의 은행계좌를 조사;
- 세무기관의 서면요청에 의거 계좌사용내역의 제공;
- 세무기관의 서면요청에 의거 수출입계약 이행에 대한 정보 제공; 6월 이내(무역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3월 이내)에 은행계좌로 송금을 한 기업이 경영활동 중단과 관련하여 회사 계좌를 폐쇄한 경우, 은행계좌를 폐쇄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정보제공 등(동법 제7조).

(5) 세관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е)

1) 입법취지

본법의 입법취지는 세관 활동의 법적근거를 확정하기 위함이다. 세관은 단일관세정책 및 우즈베키스탄 경제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

립되었다(동법 제1조).

2) 주요 내용

(가) 세관(таможенные органы)

세관은 우즈베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таможенный комитет),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주, 타쉬켄트시 국가관세위원회(управ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тамож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세관(таможенные комплексы и таможенные посты)이 있다(동법 제3조).

-
- (나) 세관의 기본임무
-
- 세관의 기본임무는 아래와 같다:
- 법인 및 자연인의 권리 및 법률로 보장되는 이익의 보호;
- 우즈베키스탄 경제이익의 보호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경제안보의 보장;
- 세관정책의 입안 및 실행에 참여;
- 관세법 준수 감독;
- 세관감독의 대상인 상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감독;
- 관세법 위반에 대한 경고 및 중단;
- 세관 통계의 작성 등(동법 제4조).

• (다) 세관의 기본 권한

세관의 기본 권한은 다음과 같다: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 운송수단의 물품을 검사할 권한;

검사를 위해 물품, 운송수단 및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외환감독의 수행;

제 3 장 주요 관련 집행법률

- 금융기관과 법인 및 자연인으로부터 수출입활동과 관련된 정보 및 서류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세관감독을 목적으로 물품의 샘플을 채취할 권리;
-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 관세법 위반에 관한 물질을 검사하고, 자연인 및 법인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묻기;
- 관세법 위반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운송수단을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 압류(задерживать и изымать);
-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물품 및 불법적으로 제조된 제품이 수입되거나 중계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의 몰수에 대한 결정;
- 심문 및 조사활동 등(동법 제5조).

(라) 세관과 다른 기관 및 단체 간의 상호협력

- 세관은 다른 국가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임무를 이행한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은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 경제주체가 관세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거 경제주체의 계좌를 폐쇄함;
- 세관의 관세 및 그 지연이자의 압류지시의 이행;
- 관세채무를 가진 경제주체의 숨화계좌에 숨화가 없고, 외환계좌에 외환이 있는 경우, 외환매각을 통한 관세채무변제 등(동법 제 7조).

(6) 대외경제활동법(Зако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ости)

1) 입법취지

본법의 입법취지는 대외경제수행 관련 관계의 규율에 있다. 한편, 본법의 주요 과제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안보의 보장과 대외경제수행

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주권의 보호 및 경제이익의 보호, 경제발전의 동기부여, 세계경제시스템으로 국가의 경제편입을 위한 조건 조성에 있다(동법 제1조).

2) 주요내용

(가) 대외경제활동의 주요 방향

-
- 본법에 의거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의 주요 방향은 아래와 같다:
 - 국제 경제 및 금융협력;
 - 대외무역활동;
 - 외국투자유치;
 - 외국에 대한 투자활동(동법 제9조).

(나) 외국과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외국의 무역-경제 대표사무소는 우즈베키스탄이 해당외국과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외국법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령에 의거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표사무소의 설립과 관련하여 권한기관은 대외경제부이다.

-
- (다) 대외경제활동의 국가통제
 - 대외경제활동의 국가통제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대외경제활동 관련 법령의 정비;
 - 외환통제;
 - 조세통제;
 - 관세통제;

제 3 장 주요 관련 집행법률

-
- 우즈베키스탄 경제 이익의 보호를 위한 보호, 보상 및 반덤핑 정책; 개별품목의 수량의 제한 및 수 수출입의 국가 독점(수출입을 국가가 독점하는 품목);
- 수출통제품목의 지정;
- 수출입물품의 증명서(сертификат) 발급;
- 대외경제활동주체에 특혜의 부여 등(동법 제17조).

(라) 대외경제활동분야와 관련된 내각의 권한

- 우즈베키스탄에서 대외경제활동과 관련된 내각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 대외경제활동 발전전략의 수립;
- 우즈베키스탄 경제안보의 보장, 경제주권 및 경제이익의 보호;
- 대외경제활동과 관련한 국제조약의 체결;
- 외국차관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급보장;
- 외국에서의 우즈베키스탄 소유권의 점유, 사용 및 처분;
- 기타 법령이 정한 권한(동법 제18조).

(마) 대외경제활동 통제에 대한 권한기관

우즈베키스탄에서 대외경제활동통제와 관련하여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관계, 투자 및 무역부(이하 “대외경제부”)이다.

대외경제부는 대외경제활동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수행하고, 대외경제활동 시 우즈베키스탄 경제이익의 보호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대외경제활동과 관련된 법령개선을 제안하며, 법률이 부여한 권한범위 내에서 경제주체의 활동을 조정 및 통제한다(동법 제19조).

(바) 수출입의 금지 및 제한

우즈베키스탄 법률로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안보의 보장;

2. 주요 관련 집행 법률의 검토

-
-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 및 환경보호;
- 도덕 및 미풍양속의 보호;
- 우즈베키스탄 민족의 문화유산의 보호;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 및 반출과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이전
- 으로부터의 보호;
- 우즈베키스탄 경상수지(платежный баланс) 균형의 유지;
- 국제의무의 이행;
- 천연자원고갈의 예방;
- 기타 우즈베키스탄 이익의 보호(동법 제20조).

(7) 주민고용법(Закон О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1) 입법취지

본법의 입법취지는 실업자의 사회보장 및 주민의 고용 감독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 2) 주요내용

(가) 고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원칙

-
- 노동의 권리 및 직업선택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언어,
- 출생배경,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종교, 신념, 사회단체 소속 등
- 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의 제공; . . .
- 고용에 대한 사회적 보장;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의 지원;
- 경제, 사회정책과 고용정책의 조화;
- 고용보장의 이행을 위한 연구, 실현 및 감독을 위해 노 사 정
- 의 협력;

제 3 장 주요 관련 집행법률

- 고용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동법 제5조).

- (나) 노동에 대한 권리의 보장

-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 채용의 불법적인 거부 및 노동계약의 불법해지로부터의 보호;
- 취업의 무료 알선;
- 무료직업교육 등(동법 제6조).

- (다) 실업 시 사회적 도움을 받을 권리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실업자로 인정되는 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동법 제12조).

- (라) 해외 취업활동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동법 제13조).

- (마) 노동사회보장부의 기능

- 노동시장의 분석 및 예측과 고용증대책의 개발;
- 지방 고용 관련 기관에 방법론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실업자 지원을 위한 고용기금사용방향 결정,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직업교육 및 재교육;
- 고용 관련 법령 준수 감독 등(동법 제16조).

- (바) 고용기금(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фонд содействия занятости)

고용정책의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기금이 조성된다. 고용기금은 예산외 기금이고 내각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기업, 단체 등의 의무 공제 등으로 마련된다(동법 제21조).

(사) 실업자 지원 보장

국가는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직업교육 및 재교육 비용을 지급하며, 피부양자가 있는 실업자에게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유료공공근로의 기회를 제공을 보장하며, 노동기관의 제안으로 다른 장소로 자발적으로 전직을 하게 되는 경우 비용을 보상한다(동법 제 24조).

(아) 노동계약 해지 시 물질적 지원의 추가 보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고근로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최대 2개월의 월평균 급여를 지급을 보장하게 한다:

- 근로자가 새로운 노동조건하에서 근무 거부;
- 기술, 생산 및 노동 조직 변화, 노동인원감축;
- 회사의 청산;
- 근로자의 숙련 미숙으로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 또는 건강상의 이유;
- 이전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복귀;
- 회사 이사 등이 회사 소유자의 변경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계약 해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청에 구직자 등록을 한 경우, 해고근로자는 2월의 월평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3개월째에는 지방노동청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1월 평균 급여를 받는다.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실업자로 간주된다.

상기의 경우에 해당한 근로자가 직업재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마친 경우, 교육비가 지원된다.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용주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임금을 우선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청산되는 법인 근로자에게 보상할 재원이 없는 경우, 국가고용기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회사의 청산, 인원감축으로 퇴사를 한 근로자가 고용계약 해지 10일 이내에 직업교육 및 재교육을 받은 경우, 노동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이전 근무지의 평균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지방노동청은 해고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한 교육비 등은 전부 또는 일부 보상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8) 경쟁 및 독점제한법(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1) 입법취지

본법의 입법취지는 독점 활동 및 불공정한 경쟁의 조직적이고 법률에 근거한 경고, 제한 및 중단을 목적으로 하고, 물품시장에서 경쟁관계의 형성 및 효율적인 기능을 위한 조건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

본법은 외국법인, 국가기관, 지방기관 등이 포함된 법인 및 자연인이 참여하는 우즈베키스탄 물품시장에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적용된다. 또한 본법은 상기의 법인 및 국가기관이 외국에서의 행위 및 체결한 합의가 우즈베키스탄 물품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 할 수 있거나 또는 기타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 적용된다.

본법은 발명, 실용신안, 상표, 저작권, 품종개량의 법적 보호에 관해 규율하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기 권리의 고의적인 악용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노동시장, 유가증권시장 및 금융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행위 및 불공정 경쟁과 관련한 문제는, 상기 시장에서의 문제가 물품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본법의 규정은 본법의 적용이 자연독점주체들의 특별한 기능의 이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자연독점의 주체에도 적용된다.

• (나) 경제주체의 독점적 지위 남용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의 행위의 결과 경쟁의 제한이나 다른 경제 주체의 이익을 축소시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금지된다:

물품의 유통을 차단할 목적으로 그 결과 시장에서 가격덤프 또는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행위;

제 3 장 주요 관련 집행법률

-
- 독점적으로 높거나 또는 독점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계약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은 조건의 강요하는 행위;
- 계약 상대방에게 다른 경제 주체에 비해 불평등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차별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행위;
- 계약 상대방이 다른 물품을 매입 또는 판매하는 조건에서만 또는 계약 상대방이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물품을 취득 또는 다른 경제주체에게 물품을 매각을 금지하는 조건에서만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행위;
- 해당물품의 생산 또는 공급이 가능함에도 근거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 다른 경제주체가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상기 행위들은 경제주체가 그 행위가 사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반독점기관은 상기의 행위들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동법 제5조).

(다)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주체들의 담합

- 경쟁하는 경제주체들 또는 일정한 물품 시장에서 35% 이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다음과 같은 목적의 담합은 금지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 무효로 간주된다:
- 고정가격, 할인, 할증, 가격인상 등의 확정 또는 유지;
- 인위적으로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로 자유로운 시장가격 형성의 방해;
- 생산, 판매시장 및 자본투자의 통제;
- 인위적인 공급변경을 목적으로한 생산량의 합의;
- 경매, 거래소 등에서 가격의 인상, 인하 또는 유지;
- 가격차별;

- 지역적 구분, 판매 또는 매수량, 물품의 종류, 상인 또는 매수인, 주문자의 분류에 따른 시장의 분할;
- 시장에 접근 제한 또는 일정한 물품의 매도인으로서의 다른 경제주체를 시장에서 배척하는 행위.

경쟁자가 아닌 경제주체의 합의인 경우에도 경제주체 중 일방은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고, 다른 일방은 그 공급자 또는 매수인이 되고, 동 합의의 결과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되거나 절차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 무효로 간주된다.

다만, 상기 행위들은 경제주체가 그 행위가 시장에서 거래조건을 향상시키고,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반독점기관은 상기의 행위들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

법인 연합(협회) 등이 개별적인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경쟁을 제한하는 개입행위는 금지된다. 상기 행위는 법인연합(협회) 등의 해산사유가 될 수 있다(동법 제6조).

• (라) 불공정한 경쟁의 금지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공정한 경쟁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부정확하고, 잘못된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포로 다른 경제주체가 피해를 주거나 경제주체의 명성에 피해를 주는 행위;
 - 지적 활동 결과물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한 행위;
물품의 특징, 제조 방법 및 장소, 품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광고 및 생산 또는 판매 과정에서 다른 경제주체의 제품과의 부정확한 비교;

제 3 장 주요 관련 집행법률

- 권리자의 동의 없이 기술, 생산 또는 거래 정보의 취득, 사용, 누설하는 행위;
- 새로운 경제주체에 물품 및 서비스 시장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동법 제8조).

(마) 국가반독점기관의 기본과제 및 활동방향

국가반독점기관(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нтимонопольный орган)은 물품시장에서 경쟁발전 정책의 수행과, 경제주체의 독점 활동 및 불공정경쟁의 제한 및 중단 등을 수행한다. 국가반독점기관의 기본과제 및 활동방향은 다음과 같다:

- 반독점법령 및 소비자권리보호법령의 준수 여부 감독;
- 물품시장에서 독점 활동,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의 경고 및 통제와 소비자 이익을 해하는 불공정경쟁의 중단;
- 우즈베키스탄 기업-독점자 국가리스트의 작성; 경제의 탈독점화, 경쟁의 발전 및 소비자 권리의 보호 이행을 위해 정기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에 정보 제공의 보장; 반독점 규제 및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외국의 경험 분석 등 (동법 제9조).
- (바) 경제주체들의 설립, 조직변경 및 해산에 관한 감독

국가반독점기관은 다음의 행위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 법인 연합의 설립, 인수 및 합병;
- 금융-산업그룹, 지주회사의 형성을 수반한 인수 및 합병;
- 회사의 청산이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회사의 청산 및 분할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경제주체의 등장의 초래;

상기 2번째와 3번째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인수, 합병 및 청산을 결정을 경제주체는 국가반독점기관에 다음을 제출한다:

-
- 경제주체의 설립, 조직변경 및 해산에 대한 동의 신청서;
결합되는 각 경제주체의 사업형태 등에 대한 정보, 각 경제주체들의 해당물품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결합체에 가입 동의서(동법 제 14조).

(사) 반독점법 위반 책임

-
- 반독점법을 위반한 경제주체 등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반독점기관의 지시 이행;
 - 손해배상;
 - 벌금납부;반독점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행정상, 형사상 및 기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9) 자연독점법(Закон О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ях)³⁵⁾

1) 입법취지

동법의 입법취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물품시장에서의 독점주체의 활동과 관련된 관계의 규율과 소비자, 국가 및 독점주체의 이익의 균형을 보장하는데 있다(동법 제1조).

-
- 2) 주요내용

(가) 독점주체활동 통제 분야

송유관을 통한 석유제품, 가스, 석유운송;
전기 및 열에너지의 생산 및 운송;

35) 본법의 “자연독점”의 의미는 물품시장에서 일정한 물품에 대한 수요의 충족을 위해 경쟁의 유발이 기술적인 특징에 의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동법 제3조).

제 3 장 주요 관련 집행법률

-
- 철도인프라의 이용;
- 우편서비스;
- 상하수도 서비스;
- 항공 항해 서비스;
운송터미널 서비스(동법 제4조).

(나) 자연독점주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

- 자연독점주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은 국가반독점기관에서 수행한다.
국가반독점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독점의 주체가 국가통제를 받고 있는 물품의 생산과 관련 없고, 동거래 금액이 자연독점주체의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또는 기본자산의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래;
- 자연독점의 주체가 국가통제를 받고 있는 물품과 관련이 있고,
- 동거래의 금액이 자연독점주체의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본자산 일부의 사용권의 양도;
-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량에 관한 계약의 이행;
물품 가격의 형성 및 적용 절차에 준수;
자연독점 주체의 설립, 조직변경 및 해산.

자연독점주체가 상기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반독점기관에 해당 정보 및 해당 행위의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반독점기관은 신청 서류의 미비 또는 정보의 제공이 불충분한 경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 4 장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률 및 제도

1. 도입

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외국인투자자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해당 국가의 노동법, 세법, 외국인투자보장법 등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세법 및 외국인투자보장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밖에 우즈베키스탄의 토지 제도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바, 우즈베키스탄 토지법상의 주의점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나보이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자, 특히, 우리 기업의 투자유치에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다. 이에 나보이경제특구에 관한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노동법

(1) 고용계약의 체결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 한다(노동법 제72조). 우즈베키스탄 내각령 제133호로 고용계약의 기본양식이 승인되었고, 동 고용계약의 기본양식은 권고적 성격을 가진다. 실무상, 고용계약 체결 시 우즈베키스탄 내각령에서 승인한 고용계약의 기본형식이 널리 이용되고, 사안에 따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된 내용을 고용계약의 기본양식에 추가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2) 고용계약의 형태

고용계약은 계약의 기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계약이다. 고용계약에 고용기간의 특징이 없는 경우 불특정기간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형태는 고용계약기간을 특정한 경우이다. 기간을 특정하는 경우는 업무의 성격상 계약기간을 5년 이상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및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체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회사가 5년 이내에 수행해야하는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기간을 특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경과하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고용계약 해지에 대해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동 계약의 기간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세 번째 형태는 일정한 업무의 수행에 대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이는 노동자가 해당 업무를 위해서만 필요하고,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체결된다(노동법 제75조).

- (3) 고용계약의 의무적 기재사항
-
-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은 고용계약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근무 장소;

직원의 업무내용(직위, 구체적 수행업무 등);

업무시작일;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고용계약 기간;

- 임금 및 기타 고용 조건(노동법 제73조).

(4) 고용계약의 무효

고용계약이 관련 법령에 규정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상황을 열악하게 하는 고용계약의 조건은 무효이다. 특히, 고용계약체결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

-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한 고용계약 해지의 추가적인 근거;
- 법률이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
노동법이 정한 최대 견습기간의 연장;
- 파트타임(по совместительству) 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의 도입;
- 법률이 정한 최대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 요구;
근로자에게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물질적 책임의 부과(내각령 고용계약 권고 제6절).

(5) 견습기간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은 견습기간제도를 두고 있고,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견습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노동법 제85조).

- 한편, 고용계약에 견습기간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견습기간 없이 채용된 것으로 간주된다(노동법 제84조).

다만, 다음의 경우 채용 시 견습기간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임산부;
-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노동법 제84조).

견습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근로자는 3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서면통보 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노동법 제87조).

(6) 파트타임고용계약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은 근로자가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지는 기본근무지와 파트타임근무지로 구분된다. 파트타임고용계약을 체결 시 고용계약에 직위, 파트타임여부, 1일 근무시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내각령 고용계약권고 제3절).

(7) 고용계약의 종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용계약의 해지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당사자의 합의;
- 당사자 일방의 요구;
계약기간의 종료;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
고용계약에 규정된 근거(노동법 제97조).

고용계약의 해지는 프리카즈(명령)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노동법 제107조). 고용계약 해지일(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용수첩 및 고용계약해지 프리카즈(명령)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노동법 제108조).

다음에서는 고용계약 해지의 구체적 요건들에 대해 살펴본다.

1) 당사자의 합의

당사자들은 합의로 고용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노동법 제 97조).

2) 당사자 일방의 요구

근로자는 2주전에 사용자에게 고용계약해지에 대해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기간 이전에 고용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생산 기술, 조직 및 노동의 변경, 노동인력의 변화를 초래하는
- 노동량의 감축, 노동성격의 변화 또는 법인의 해산;
- 근로자의 업무미숙련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 근로자의 조직적인 고용의무위반;
- 고용의무의 심각한 위반(1회);
- 파트타임직원을 대신하여 정규직원을 채용한 경우 및 노동조건에 따라 파트타임 업무의 제한으로 인한 파트타임직원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 회사 소유주의 변동으로 인한 회사의 사장, 부사장 또는 수석회계원(수석회계원 직위가 없는 경우 수석회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 등과의 고용계약해지(노동법 제100조).

3) 계약기간의 종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 1주일 동안 당사자 일방 중 누구도 고용계약의 해지에 대해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은 불특정기간동안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고용계약이 직위가 보장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부재 중 체결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복귀로 고용계약은 종료된다(노동법 제105조).

(8) 외국인과의 고용계약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노동비자 및 노동활동권리에 대한 확인서(Подтверждение на право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회사는 외국인고용허가서(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ей силы)를 취득하여야 한다.

한편, 확인서 및 노동허가서의 발급기관은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노동이민국(Агентство по вопросам трудовой мигр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уда РУ)이다(우즈베키스탄 시민의 외국에서의 노동활동과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노동활동에 관한 내각령 제408호).

(9) 임 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소임금에 대해서는 매년 대통령이 결정한다. 2009. 6.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최소임금은 28,040숨이다(대통령령 제4042호).

급여의 지급은 2주에 최소 1회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노동법 제161조), 실무상 동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월 1회

에 지급을 한다.

(10) 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무시간은 주 5일제 또는 주6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주6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은 7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5일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노동법 제115조).

2) 초과근무

우즈베키스탄에서 초과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24시간 교대근무(12시간 근무) 및 특별히 힘든 노동 및 유해한 노동에 대해서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노동법 제124조).

초과근무는 2일간 4시간, 1년에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노동법 제125조).

3) 야간근무

우즈베키스탄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로 간주된다. 야간근무의 경우에 법정 근무시간보다 1시간 단축되어야 한다. 즉, 주 6일 근무의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5일 근무의 경우에는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노동법 제122조).

4) 휴일근무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은 휴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개별적인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단체계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노동법 제130조). 한편, 단체협약을 통해 휴일근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초과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의 보상

초과근무, 휴일근무는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는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노동법 제157조). 야간근무의 경우 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노동법 제158조).

한편,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시간만큼 휴식을 제공할 수도 있다(노동법 제157조).

(11) 휴일 및 휴가

- 1) 법정휴일
- 우즈베키스탄의 법정휴일은 다음과 같다:
 - 1월 1일 - 새해
 - 3월 8일 - 여성의 날
 - 3월 21일 - 이슬람 설날(나르부즈 축제)
 - 5월 9일 - 현충일
 - 9월 1일 - 독립기념일
 - 10월 1일 - 스승의 날
 - 12월 8일 - 제헌절
 - 종교 축제일 첫날 (오루자 하이트)
 - 종교 축제일 첫날 (쿠르반 하이트)³⁶⁾

36) 이슬람 종교 행사인 라마단이 끝나는 시점에 시작되는 루자 하이트 종교경축일 첫째 날은 해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2008년의 경우 10월 1일 루자 하이트 종교경축일 첫째 날이고, 루자 하이트 종교경축일 종료 후 40일이 경과한 날 꾸르반 하이트 종교경축일 첫째 날이 시작된다.

법정휴일에 노동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의 중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정휴일 근무는 허용된다(노동법 제132조).

2) 휴 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유급휴가는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부여되어야 하고,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6월이 경과되어야 한다(노동법 제143조).

한편, 유급휴가는 15일 이상이어야 한다(노동법 제134조). 다만, 휴가일의 산정 시 6영업일로 계산이 된다(노동법 제139조).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노동법 제150조).

이 밖에 근로자는 출산휴가 및 자녀보육휴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70일 출산 후 56일이고, 자녀보육휴가는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이다(노동법 제149조).

3. 토지제도

(1) 개 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직까지 토지사유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국가소유이다(토지법 제16조). 한편, 주택, 상가건물 등의 소유권은 인정되는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2중소유구조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토지소유권 이외에도 토지영구사용권, 토지임시사용권, 토지향구상속점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형태가 존재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토지는 매매, 증여,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토지법 제16조).

(2) 권한기관 및 권한 내용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관계를 규율하는 권한기관은 내각 및 타쉬켄트주, 타쉬켄트시청, 구청 등이다.

- 토지관계와 관련하여 내각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단일한 국가정책의 실행;
 - 토지법 및 기타 법령에 의거 토지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제정;
 - 국가소유토지의 처분;
 - 토지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부처별 역할 조율;
 - 토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점유, 사용권과 임차권 및 소유권의 취소 등(토지법 제4조).
- 토지관계와 관련하여 타쉬켄트주 및 타쉬켄트시청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법인에게 농업 및 기타 국가 및 사회적 필요를 목적으로 토지의 점유, 사용권 및 임차권의 부여;
 - 외국공관 등의 건설을 목적으로한 토지의 매각;
 - 토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점유, 사용권과 임차권 및 소유권의 취소 등(토지법 제5조).

토지관계와 관련하여 구청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개인 및 법인에게 토지의 점유, 사용 및 임차권의 제공;
- 개인 및 법인에게 상가건물 등에 부속된 토지 소유권의 매각;
- 경매를 통해 개인에게 토지항구상속권(право на пожизненное наследуемое владение земельными участками)의 매각;

• 토지법 제36조의규정에 의거 토지의 점유, 사용권과 임차권 및 소유권의 취소 등(토지법 제6조).

(3) 국가토지카다스트르(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земельный кадастр)³⁷⁾

국가토지카다스트르는 토지의 면적, 위치, 공시지가, 법률관계 등과 같이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즉, 국가토지카다스트라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토지카다스트라는 국가토지카다스트라국에서 작성 및 보관한다(토지법 제15조).

(4) 토지에 대한 권리의 형태

우즈베키스탄에서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를 영구점유권, 영구사용권, 임시사용권, 임차권 및 소유권의 형태로 가질 수 있다.

한편, 개인의 경우에는 토지를 항구상속점유권, 영구사용권, 임시사용권, 임차권 및 소유권의 형태로 가질 수 있다.

(5) 법인 및 자연인의 토지소유권 발생 근거

•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토지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 및 자연인의 경우 상가 및 서비스 부분과 관련된 건물의 사유화 시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37) 국가토지카다스트라는 토지대장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 외교공관 등의 건물에 부속한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 외국법인 및 자연인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승인된 외교공관 직원, 언론특파원, 회사 및 국제기구 연락사무소 직원, 외국인 투자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는 직원,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주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자는 주택 매입 시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토지법 제18조).

(6) 토지영구사용권

토지는 영구사용권의 형태로 법인 및 개인에게 부여될 수 있다. 영구사용권은 우즈베키스탄 시민, 법인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회사 및 외국인, 외국법인에게도 부여된다.

영구사용권을 결정문(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кт) 형태로 부여된다(토지법 제20조).

건물, 설비 기타 부동산에 부속된 토지의 영구사용권은 건물, 설비 기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시 함께 이전된다(토지법 제22조).

(7) 토지임차권

토지는 임대차계약에 의거 유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우즈베키스탄 시민 및 법인에 대한 토지 임차권의 제공에 대해서는 구청 및 시청이 담당하고, 외국투자기업, 외국법인 및 외국인에 대한 토지 임차권의 제공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 내각이 담당한다.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임대 토지는 매매, 담보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대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법률 또는 임대차 계약에 규정된 경우에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은 자신의 토지임차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토지의 임대 조건 및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결정이 된다. 다만, 농지의 경우 최소 30년 최대 50년간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한편, 토지임대차계약의 조기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능하다(토지법 제24조).

(8) 토지 사용료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의 사용은 유료이다.

토지의 점유, 사용권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 및 자연인은 토지에 대해 매년 토지세의 형태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한다. 토지세는 토지의 질, 위치 및 용수공급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한편, 토지 임차의 경우, 임차료의 형태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한다(토지법 제28조).

- (9)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영구사용권 부여에 대한 증서(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кт на право постоянное пользование земельным участком);
 - 토지소유권 증서(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ордер на право собственности на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 임대차계약서(Договор аренды);

- 토지에 대한 권리등기 확인서(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права на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등(토지법 제33조).

(10)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료

- 토지 점유권, 영구사용권, 임시사용권 및 임차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료될 수 있다:
 - 토지의 자발적 반납;
 - 기간의 종료;
 - 법인의 해산;
 -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토지 사용;
토지관련 세금의 조직적 미납;
토지에 대한 권리제공 후 농지의 경우에 1년, 비농지의 경우에 2년 동안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 등(토지법 제36조).

4. 조세제도

(1) 개요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할 때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문제 중하나가 세금문제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세목과 각 세목에 대한 세율 및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주요세목

1) 국 세

법인세(налог на прибыль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소득세(налог на доходы физических лиц);

-
- 부가가치세(налог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 물품세(акцизный налог);
 - 지하자원세(налог и специальные платежи для недропользователей);
 - 수자원사용세(налог за пользование во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2) 지방세

-
- 재산세(налог на имущество);
- 토지세(земельный налог);
- 사회인프라개발세(налог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и развитие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개인운송수단을 위한 휘발유, 디젤 연료 및 가스세(налог с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на потребление бензина,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и газа для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3) 기타 의무납부(другие обязательные платежи)

-
- 사회기금의무납부(обязательные платежи в социальные фонды);
- 공화국도로기금의무납부(обязательные платежи в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дорожный фонд);
- 국가수수료(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шлина);
- 관세(таможенные платежи);
- 개별품목 소매업 권리 및 서비스 제공 수수료(сбор за право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отдельными видами товаров и оказание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услуг).

(4) 간소화된 세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세법이 규정된 경우 및 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은 간소화된 과세가 적용된다:

- 단일세(единый налоговый платеж);
- 단일토지세(единый земельный налог);
기업의 사업형태에 따른 고정세(фиксированный налог по отдельным вида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5) 주요 세목의 내용

1) 법인세

(가) 납세자

우즈베키스탄 거주자 및 우즈베키스탄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비거주자이다(세법 제126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우즈베키스탄에 설립된 법인은 과세 목적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다.

(나) 과세대상

우즈베키스탄 거주자의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고,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으로부터 창출된 수익에 대하여는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법인세를 산정하며,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해 일정세율을 법인세로 산정한다(세법 제127조).

(다) 손금불산입항목(세법 제147조)

- 재산가치의 자연적인 손해를 초과한 손해;
- 매출액의 1%를 초과하는 접대비, 고객관련 행사비용 등;

-
- 규정을 초과한 출장경비;
-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자발적인 보험료;
- 벌과금;
- 업무무관비용;
- 납세자의 활동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종업원의 훈련비용;
- 종업원의 노동능력상실 또는 기타 건강의 훼손, 종업원 가족의 사망 또는 종업원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상비를 제외한 종업원에 대한 물질적 지원;
- 업무무관비용;
- 대출계약서에 약정된 이자를 초과한 연체이자;
- 제품의 하자 및 훼손에 책임이 있는 공급인 또는 다른 경제주체의 비용으로 보상할 수 없는 하자보수비용, 제품하자 검수비용 등;
- 명절 및 경축일 등과 관련된 종업원에 대한 일회성 포상금;
- 소송비용;
- 계약위반 및 법령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등.

(라) 세율(대통령령 제1024호{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У NoПП-1024 от 2008.12.29.})

2009년 현재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10%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중 은행의 경우 15%의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의 수출비중이 총매출액의 15-30%인 경우 법인세가 30% 감면되고, 수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경우 50%의 세금감면이 있다.

(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우즈베키스탄 비거주자에게는 개별적인 과세절차가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 세법 제20조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비거주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즈

• **베키스탄 세법상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한다:**

- 상품의 생산, 가공, 조립, 포장작업, 판매 등과 관련된 활동 수행
- 의 모든 장소;
- 연락사무소, 지사, 영업소, 공장, 상점, 창고 등;
- 광산, 채석장,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의 채굴장소;
- 건축 장소, 건설 조립 공사 현장;
- 영업행위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장소
- 중개인을 통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중개인 등.

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10%의 법인세율에 추가적으로 순이익에 대해 10%가 과세된다. 순이익은 우즈베키스탄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가 법인세를 공제하고 취득한 이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비거주자의 소득이 100달러인 경우, 100달러에 대한 법인세 10%를 공제한 금액 90달러에 대한 10%의 세금, 즉, 9달러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어 비거주자는 총 99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세법 제155조).

소득유형	세 율
이익, 배당	10%
보험료 수입	10%
국제통신 및 화물수입	6%
로열티, 렌트, 리스소득, 자문수수료 및 기타 소득	20%

(원천징수 세율은 한-우즈베크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우즈베키스탄 거주자가 부담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개인소득세

(가) 납세자

우즈베키스탄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은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되며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비거주자는 우즈베키스탄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진다.

(나) 과세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доходы в виде оплаты труда), 재산소득(имущественные доходы), 물질이득소득(доходы в виде материальной выгоды) 등이 있고(세법 제171조),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세법 제172조):

- 고용계약에 의해 제공된 근로;
- 근로자의 업무무관비용을 고용주가 대신 부담한 경우 그 대가;
- 근로자가 판매한 재화나 용역의 이윤;
- 고용주가 탕감해 준 근로자의 채무;
-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지급한 생명보험금;
- 그 외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고용주의 지출.

한편,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 임대소득, 로열티 등이고(세법 제176조), 물질이득소득은 법인이 개인에게 제공한 물품 및 재산적 권리를 의미한다(세법 제177조).

(다) 세율(대통령령 제1024호 부속서 8 {Приложение N8 к Постановл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Уз от 29. 12. 2008. N ПП-1024})

2009년 6월 현재 우즈베키스탄 거주자는 누진세가 적용된다.

과세대상소득	세 율
최저임금의 6배까지	12%
최저임금의 6배 초과 10배까지	6배에 대한 세금 + 초과분에 대해 17%
최저임금의 10배 이상	10배에 대한 세금 + 초과분에 대해 22%

* 우즈베키스탄은 최저임금이 자주 바뀜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도 정기적으로 바뀜. 2009년 6월 현재 최저임금은 28,040숨임.

3) 부가가치세

(가) 납세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나)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판매 등의 과정에서 창출된 가치에 대해 부과되고, 재화나 용역의 수입도 과세대상이 된다(세법 제198조).

(다) 세 율

2009년 6월 현재 기본 부가가치세는 20%이며, 특별히 면세가 아닌 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대금 전체에 대해 부과된다(대통령령 제1024호 제3항).

- (라) 영세율 품목
- 재화의 수출과 관련된 운송용역;
- 외국의 외교공관에 대한 재화 및 용역의 판매;
- 국제운송용역;
-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등(세법 제228조).

4) 물품세

- (가) 납세자

우즈베키스탄에서 물품세 부과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법인 및 개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물품세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법인 및 개인.

(나) 과세대상

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 물품의 생산, 수입 및 수출 시 물품세가 부과된다.

(다) 세율

물품세 과세대상 목록 및 세율은 매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승인한다. 물품세의 세율은 5%에서 90%까지 다양하다.

5) 지하자원사용세

(가) 납세자

납세자는 지하자원의 사용자이다. 즉, 지하자원을 채취하는 자 및 지하자원의 가공을 수행하는 자이다(세법 제243조).

(나) 과세대상

채굴한 지하자원의 판매가이다(세법 제244조).

(다) 세 율

지하자원사용세율은 0.4%-30%까지이다.

6) 토지세

(가) 납세자

토지를 소유한 개인과 기업은 토지세를 부담한다(세법 제279조).

(나) 과세대상

토지 소유권, 토지사용권 및 토지임차권이 과세대상이 된다(토지법 제280조).

(다) 세 율

토지세는 매년 대통령의 결정으로 정해지고, 입지, 주변 여건 등에 따라 달리 토지세가 달리 적용된다(토지법 제27조).

7) 사회인프라세

(가) 납세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주자 법인이다(세법 제295조).

(나) 과세대상

법인세 공제 후 법인의 순이익이 과세대상이 된다.

(다) 세 율

사회인프라세율은 매년 대통령의 결정으로 정해지고 2009년 6월 현재 세율은 8%이다.

8) 단일세(Единый налоговый платеж)

(가) 납세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초소형(микрофирмы предприятия)³⁸⁾ 및 소형 회사(малые предприятия)는 단일세로 통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초소형 및 소형회사라고 하더라도 물품세 대상 물품(예를 들어, 술, 담배 등)을 생산하는 기업 및 지사자원사용세 대상 지하자원을 채굴하는 회사 및 생산물분배협정 참여 회사 등은 단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세법 제350조).

(나) 과세대상

단일세의 과세대상은 총매출액이다(세법 제355조).

(다) 세 율

기본 단일세율은 총매출액의 8% 이다(대통령령 제1024호).

(라) 기 타

단일세 납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세 대상 품목의 생산 시 물품세, 단일사회세 등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세법 제349조).

(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

1) 산업분야(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세제혜택에 관한 규정)

우즈베키스탄에서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산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38) 초소형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수 20인 이하, 서비스업의 경우, 종업원 수 10인 이하, 도소매업 및 식료품업의 경우, 종업원 수 5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소기업은 경공업, 식료품산업, 전자재산업 등의 경우 종업원 수 100인 이하, 농산물 가공산업, 건설 등의 경우 종업원 수 50인 이하, 운송, 서비스, 통신, 무역, 등의 경우 종업원 수 25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기업활동자유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4 장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률 및 제도

-
- 전자공학산업 및 컴퓨터조립산업;
- 경공업(면화 및 모직 완제품 생산, 가죽가공, 신발생산 등)
- 비단산업;
- 건설자재산업;
- 육류생산산업;
- 식품산업(알코올 및 담배생산 제외);
- 유제품산업;
- 화학-의약품 산업.

2) 투자규모

- 우즈베키스탄에서 세제혜택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혜택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 미화 300,000달러부터 미화 3,000,000달러까지 - 3년;
- 미화 3,000,000달러부터 미화 10,000,000달러까지 - 5년;
- 미화 10,000,000달러 이상 - 7년.

3) 지역

-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한 조세혜택은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지 않고 아래의 주 또는 공화국에 투자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통령령 제3594호 제1항):
-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 쥐작주;
- 카쉬카다린주;
- 사르다린주;
- 수르한다린주;
- 호레즘주;
- 나보이주;

-
- 나만강주;
페르간주.
- 4) 기타 요건
-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보증이 없을 것;
-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50% 이상일 것;
- 해당법인의 등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질 것;
- 외국인투자가 자유로운 태환이 가능한 화폐 또는 새롭고 현대적인 기술 장비일 것;
세제혜택의 결과 얻어진 수입이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도안 회사를 위해 재투자에 쓰일 것(대통령령 제3594호 제2항).

5) 세제혜택 항목

-
- 상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적용되는 세제혜택 항목은 아래와 같다(대통령령 제3594호 제1항):
- 법인이윤세;
- 법인재산세;
- 사회간접자본세;
- 단일세;
- 도로세.

6) 제한 사항

우즈베키스탄 법령에 의거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한 경우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국가에 환급한 후에야 이익 및 투자된 자본의 송금을 할 수 있다(대통령령 제3594호 제5항).

5. 외국인투자법

(1) 목적 및 과제

동법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투자의 법적 근거 및 절차를 정하는 데 있다.

한편, 동법의 과제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계경제시스템으로 편입시키는데 일조하기 하는 한편, 외국의 금융, 물적 및 지적 자원, 현대식 기술 및 운영 경험의 유치 및 합리적인 이용에 있다(동법 제1조).

(2)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령은 동법과 외국인투자자의 보장 및 보호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и мерах защиты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및 기타 법령이 있다(동법 제2조).

· (3) 외국인 투자 형태

· 외국인투자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

- 지분참여(은행, 보험회사 및 우즈베키스탄 법인 및 자연인과 합작법인 설립 등);

외국인투자자 소유의 회사의 설립;

우즈베키스탄 거주자가 발행한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취득;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 의장, 노하우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

-
- 자원 탐사, 채굴 및 사용권 등의 취득;
상가건물, 주거지, 토지 점유 및 사용권(토지 임차권 포함) 등의
- 취득;
기타 외국인투자자는 우즈베키스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형태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동법 제5조).

(4)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법령이 부여하는 모든 권리, 보장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유화를 포함하여 기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도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등기 절차는 우즈베키스탄 내각이 정한다(동법 제6조).

(5)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지위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활동을 수행 시 외국인 투자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한다.

외국인투자자에게는 공평한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안전을 보장한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위는 우즈베키스탄이 비준한 국제조약이 정한 지위보다 더 열악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9조).

(6)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 외국인투자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투자 대상 및 투자활동의 결과물을 점유, 사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우즈베키스탄으로 대출 등의 형태로 차입할 수 있는 권리;
 - 외화를 구입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화폐인 숨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우즈베키스탄 법령에 의거 대출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투자자산이 국가수용이 될 경우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불법행위 등의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동법 제10조).

(7) 외국인투자자의 의무

- 외국인투자자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우즈베키스탄 법령을 준수할 의무;
 - 우즈베키스탄 법령에 따른 세금 등을 납부할 의무;
 - 투자프로젝트가 위생, 환경 기준 등에 대한 우즈베키스탄법령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전문가의 의견서 취득 의무 등(동법 제11조).

(8) 외국인노동자의 채용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령의 따라 모든 국적의 시민들과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들은 해당 복

수비자를 취득함으로써 고용계약기간동안 우즈베키스탄에 자유롭게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다(동법 제14조).

6. 나보이경제특구관련법규

(1) 개 요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나보이주에 경제특구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한국기업을 유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노보이주 산업-경제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У О создании свободной индустр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в навоийской области)”이 2008. 12. 2. 부터 효력을 발생하였고, 대통령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보이산업-경제자유지역 활동의 조직에 관한 정부령(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У О мерах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свободной индустр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НАВОИ”)”이 2009년 1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2) 나보이주 산업-경제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

1) 목 적

나보이주 산업-경제자유지역(이하 “경제특구”)의 설치 목적은 경제특구에서 외국의 높은 생산설비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의 생산에 있다(동 명령 제1조).

2) 조 건

경제특구의 기간은 30년으로 하고,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경제특구 기간 동안 경제특구에서는 특별한 관세, 외환 및 조세 시스템이 가동되고, 간편한 입·출국 및 거주 절차, 우즈베키스탄 비거주자 시민의 근로수행 허가 절차 등이 적용된다.

관세, 외환 및 조세 시스템 등 특별한 법적 체제의 적용은 경제특구 관리부에 의해 등록된 경제주체에만 적용된다.

경제특구에서의 조율 및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기구의 대표들로 구성된 행정 소베트(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совет) 및 경제특구 관리부(дирекция СИЭЗ)가 담당한다. 행정 소베트 직원들은 내각에서 승인한다.

경제특구의 모든 토지는 경제특구 수행기간 동안 행정 소베트가 사용 및 관리하게 된다.

경제특구 관리부는 경제주체에 경제특구상의 토지의 임차권을 부여한다. 다만, 부여받은 임차권을 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으로 제공하거나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경제특구상의 토지의 매각 및 기타 양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동 명령 제2조).

3) 세제혜택

• 경제특구에 등록된 기업들이 다음에 해당되는 규모의 직접투자 시 토지세, 재산세, 법인세, 사회인프라세, 단일세(소기업에만 해당), 공화국 도로기금, 공화국 교육기금 등이 다음의 기간 동안 면제된다:

3백만 유로-1천만 유로: 7년

1천만 유로-3천만 유로: 10년

3천만 유로 이상 : 15년

또한, 상기의 기간 이후에 10년간 법인세 및 단일세는 현행세율보다 50% 감액된다(동 명령 제3조).

4) 관세혜택

경제특구에 등록된 기업이 경제특구활동기간동안 도입하는 설비와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 및 부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위한 절차를 확정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내수를 목적으로한 제품을 생산을 위해 원료 및 부품을 도입하는 경우, 법률로 달리 더 유리한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50% 관세감면혜택 및 180일까지 관세납부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경제특구로 관세혜택을 받고 반입되어온 설비, 원료 및 부품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관세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거 전액 징수된다(동 명령 제4조).

5) 외환 결제

경제특구에 등록된 기업에게 당사자 간에 계약에 따라 외환으로 결제 및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출 입 품목에 대한 결제 조건 및 형태를 당사자들이 편리한 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우즈베키스탄 거주자 기업의 물품, 용역의 제공에 대해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한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동 명령 제5조).

6) 법률의 불리한 변경

경제특구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 물품세 과세 관련 법령을 제외하고 납세자의 지위를 불리하게 만드는 우즈베키스탄 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동 명령 제6조).

결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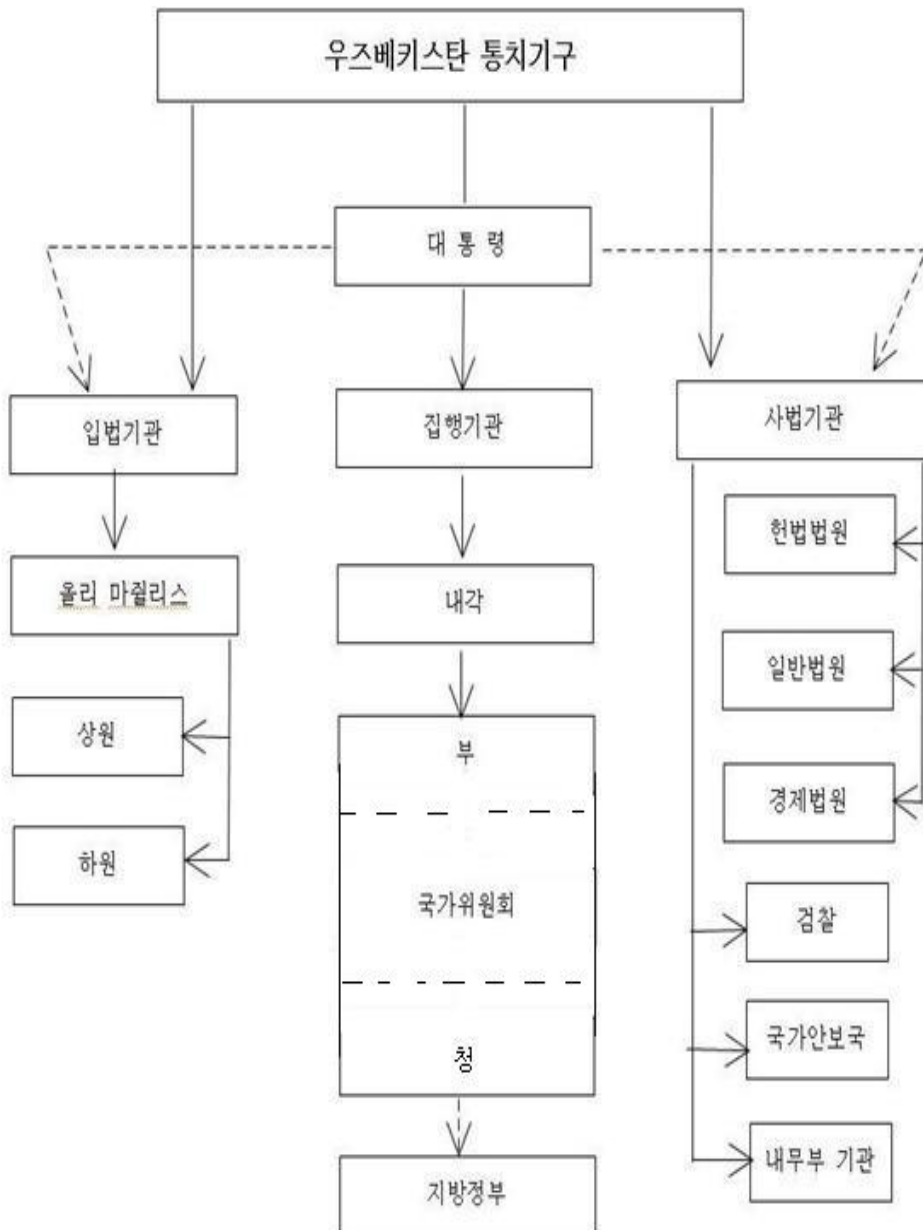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 특히, 당초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제도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려고 계획하였고, 관련 문제에 대한 판례 등도 많이 언급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어진 시간 내에 본 연구를 마무리하여야 하는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히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카자흐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기본적인 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부족한 점은 추후 카자흐스탄 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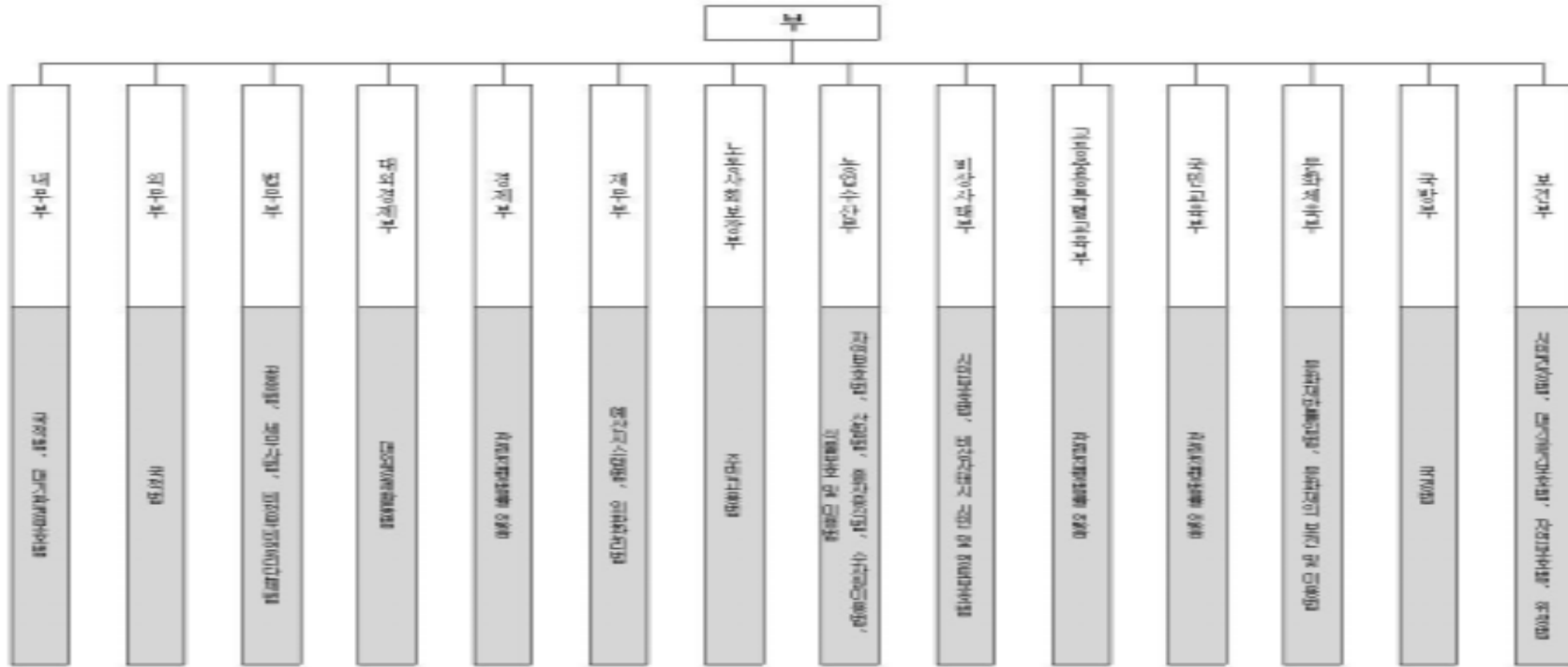
도 표

1. 통치기구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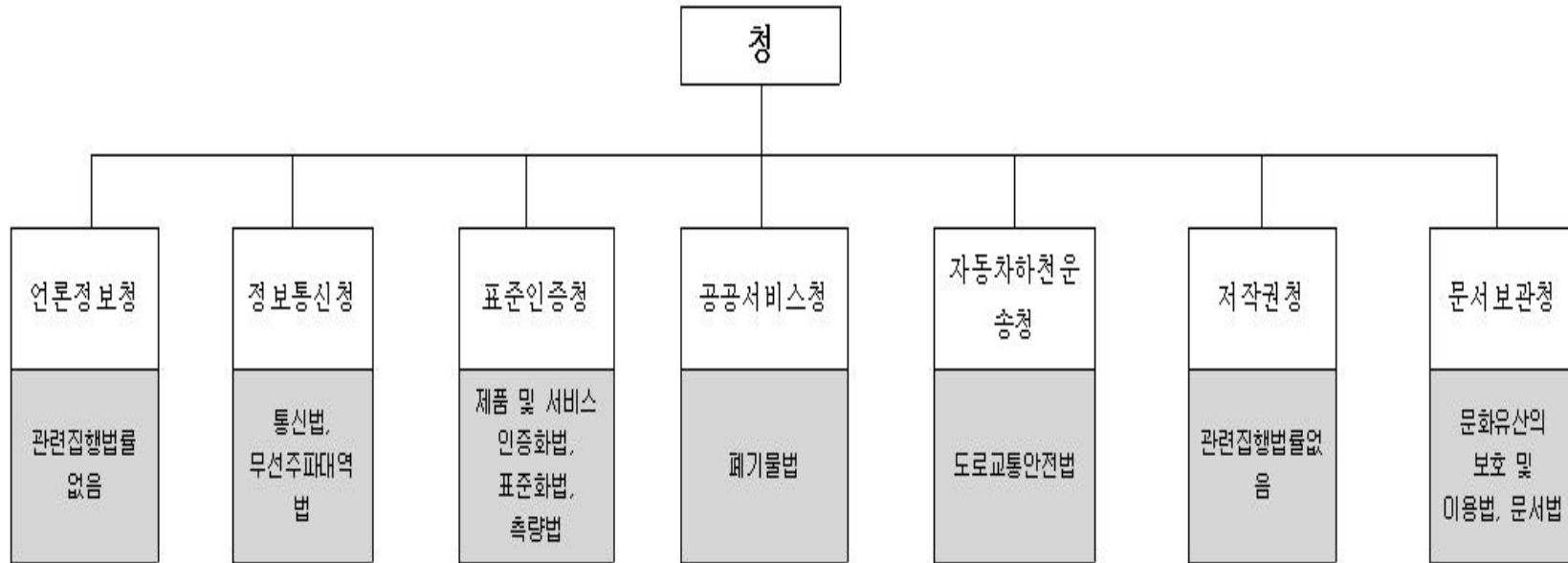


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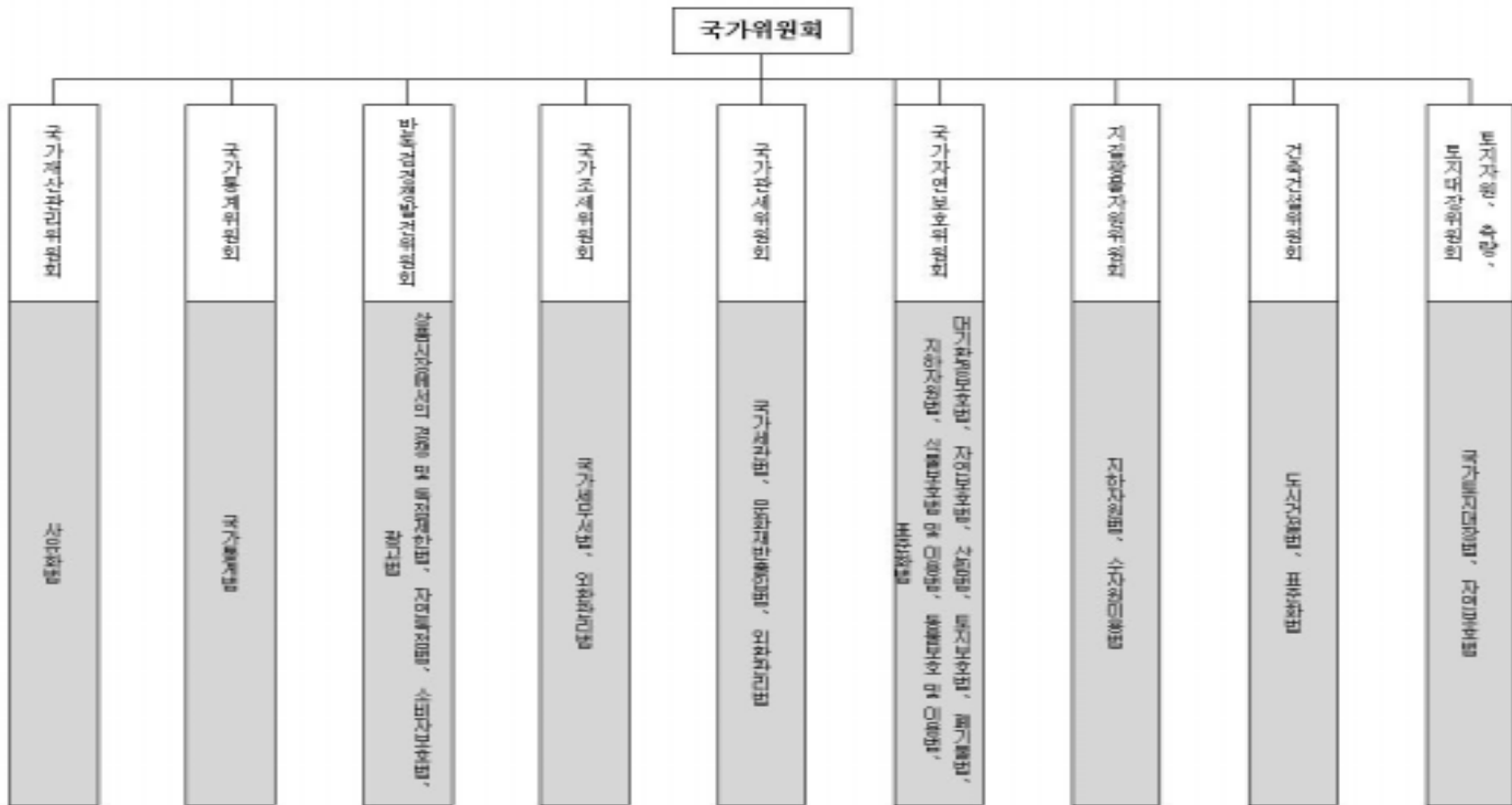
2. 정부조직에 따른 관련 법률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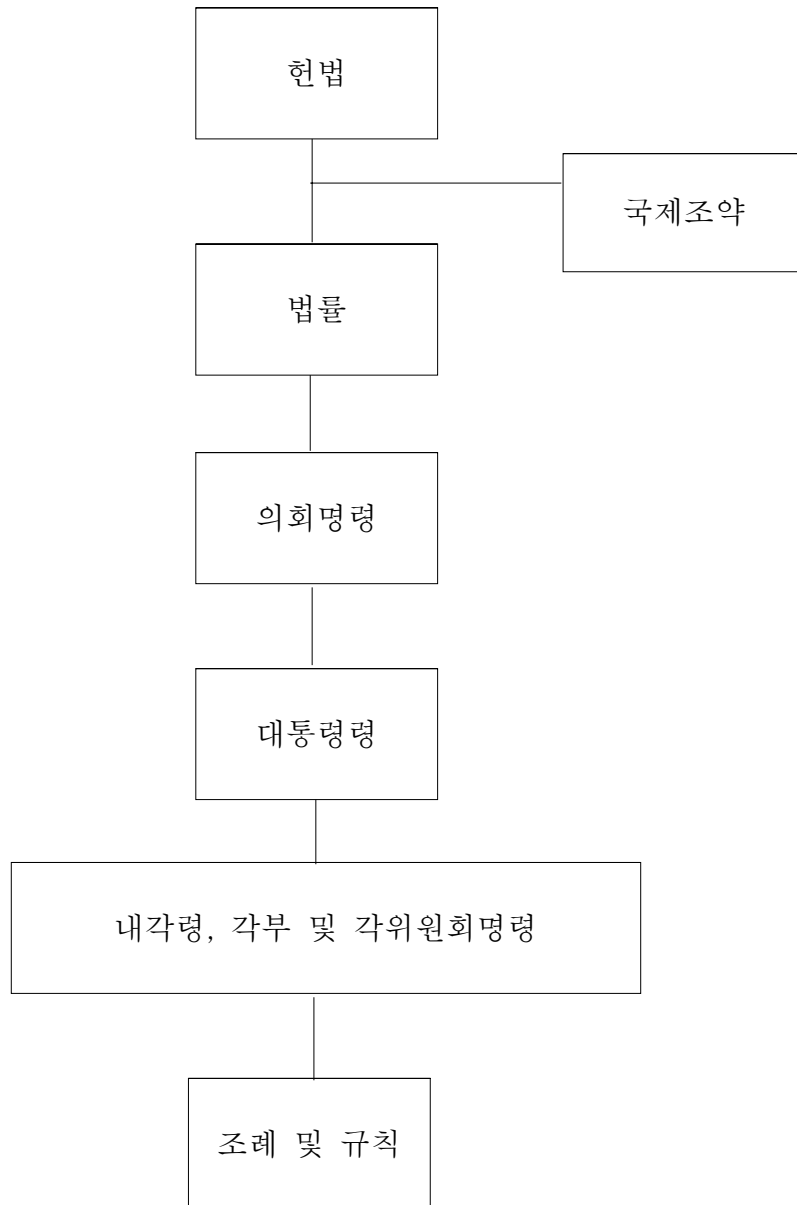
2. 정부조직에 따른 관련 법률 도표



도 표



3. 법체계 도표



[참 고 문 헌]

- 우즈베키스탄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У)
노동법(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У)
세법(Налоговой кодекс РУ)
토지법(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У)
외국인투자법(Закон РУ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외국인투자자의 보장 및 보호법(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и мерах защиты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내각법(Закон О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법규법(Закон О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ах)
우즈베키스탄 국제조약법(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ах РУ)
사유화법(Закон О разгосударствении и приватизации)
외환관리법(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대기환경보호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атмосферного воздуха)
토지보호법(Закон Об охраняемых природ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폐기물법(Закон Об отходах)
하층토법(Закон Об недрах)
도시건설법(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표준화법(Зако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국가토지대장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земельном кадастре)
자연보호법(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природы)

[참 고 문 헌]

- 세무서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е)
- 세관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е)
- 대외경제활동법(Зако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주민고용법(Закон О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 경쟁 및 독점제한법 (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 자연독점법(Закон О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ях)
- 나보이주 산업-경제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У О создании свободной индустр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в навоиской области)
- 의회 하원에 관한 헌법법률(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палате Олий Мажлиса РУ)
- 의회 상원에 관한 헌법법률(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Сенате Олий Мажлиса РУ)
- 선거법(Закон О референдуме РУ)
- 내각법(Закон О Кабинете Министров РУ)
- 지방통치기구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 헌법법원법(Закон О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м суде РУ)
- 법원법(Закон О судах)
- 윤재희, 강명구, 중앙아시아 및 극동러시아의 경제, 선학사, 2006년

참고 자료

[참고자료]

우즈베키스탄 법규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14.12.2000 г.

№ 160-П

См. текст документа
на узбекском языке

О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АХ

В настоящий Закон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РУз от 12.12.2003 г. № 568-П,
Законом РУз от 03.12.2004 г. № 714-П

I. Общие положения (Статьи 1-4)

II. Виды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참고자료]

и их соотношение (Статьи 5-14)

III. Основные требования, предъявляемые
к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м актам (Статьи 15-23)

IV. Опубликование,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и действ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Статьи 24-30)

V. Заключительные положения (Статьи 31-33)

I. ОБЩИЕ ПОЛОЖЕНИЯ

Статья 1.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настоящего Закона

Статья 2. Понят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Статья 3.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о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ах

Статья 4. Органы или должностные лица,

принимающ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Статья 1.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настоящего Закона

Настоящий Закон определяет понятие, виды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и устанавливает основные требования, предъявляемые к ним.

Статья 2. Понят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м актом является офици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принятый в определенной настоящим Законом форме,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изменение или отмену нор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как общеобязате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едписаний.

Статья 3.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о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ах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о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ах состоит из настоящего Закона и иных акто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иды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аракалпакстан и основные требования, предъявляемые к ним, определяются такж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аракалпакстан.

Статья 4. Органы или должностные лица, принимающ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Органами или должностными лицами (далее - органы), принимающими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являются палаты Ол

[참고자료]

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министер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омитеты и ведомства,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Статья в редакции Закона РУз от 03.12.2004 г. N 714-II)

II. ВИДЫ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И ИХ СООТНОШЕНИЕ

Статья 5. Виды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Статья 6.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Статья 7. Верховенство Конституции
и зак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Статья 8. Законы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Статья 9. Постановления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Статья 10. Указы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Статья 11. Постановлени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Статья 12.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ведомств

Статья 13.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Статья 14. Соотношен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Статья 5. Виды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ми актами являются:

- а)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б) законы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в)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алат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ункт в редакции Закона РУз от 03.12.2004 г. N 714-II)
- г) указы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д) постановлени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е) акты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ведомств;
- ж) решения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Статья 6.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являются актам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и образуют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коны Республ

[참고자료]

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алат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являются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ми актами. (Часть в редакции Закона РУз от 03.12.2004 г. N 714-II)

Указы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становлени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ведомств, решения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являются подзаконными актами.

Статья 7. Верховенство Конституции и зак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признается безусловное верховенство Конституции и зак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меет высшую юридическую силу и применяется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коны и ины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в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принимаются на основе и во исполн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 не могут противоречить ее нормам и принципам.

Статья 8. Законы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коны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регулируют наиболее важные и устойчив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принимаются Олий Мажлисом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ли путем проведения референдума.

Статья 9. Постановления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алат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ринимаются на основе и во исполн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и и зак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Статья в редакции Закона РУз от 03.12.2004 г. N 714-II)

Статья 10. Указы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на основе и во исполн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и и зак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ринимает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в форме указов.

[참고자료]

Статья 11. Постановлени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нституцией и законам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решениями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ринимает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в форме постановлений.

Статья 12.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ведомств

Министер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омитеты и ведом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воей компетенции принимают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в форме приказов и постановлений.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принимаемые в виде положений, правил и инструкций, утверждаются приказами или постановлениями.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ведомств принимаются на основе и во исполн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и и зак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решений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ведомств могут быть приняты совместно несколькими министерств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комитетами и ведомствами или одним из них по согласованию с другими.

Структурны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органы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ведомств не вправе принимать акты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характера, кроме случаев,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Статья 13.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в пределах своей компетенции принимают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в форме решений.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принимаются на основе и во исполн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и и зак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решений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а также вышестоящих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Статья 14. Соотношен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Соотношение различных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по их юридической силе определя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нституцией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компетенцией и статусом органа, принявшего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а также видами акто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должен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м актам, имеющим по сравнению с ним более высокую юридическую силу.

В случае расхождений между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ми актами применяетс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обладающий более высокой юридической силой.

В случае расхождений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обладающих рав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силой, действуют положения акта, принятого поздне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приняты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комитетом или ведомством, имеет большую юридическую силу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му акту друг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или ведомства одного уровня, если орган, принявший такой акт, специально уполномочен на регулирование определенной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III. ОСНОВНЫЕ ТРЕБОВАНИЯ, ПРЕДЪЯВЛЯЕМЫЕ К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М АКТАМ

Статья 15. Организация подготовки проекто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Статья 16. Изучение практики применени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Статья 17. Внесение проект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в орган, принимающий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Статья 18. Экспертиза проекто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Статья 19. Требования, предъявляемые к содержанию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Статья 20. Удостоверение официального текст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Статья 21. Реквизиты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Статья 22. Представлен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регистрацию

Статья 23. Пересмотр ранее принятых актов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нового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Статья 15. Организация подготовки проекто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Орган, разрабатывающий проект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как правило, создает комиссию по подготовке проекта.

К участию в подготовке проекто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могут привлекать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науч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и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тдельные граждане.

Орган, принимающий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может поручить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орядке или заказать на договорной основе подготовку проект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органам, науч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и и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отдельным гражданам.

Орган, принимающий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вправе поручать подготовку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проектов несколь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органам, науч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и и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отдельным гражданам или заключать с ними договоры, а также объявлять конкурсы на лучший проект.

К подготовке проекто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по отдельным отраслям экономики, другим сфер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ивлекаю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омитеты и ли ведомства, отвечающие за состояние и развит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отраслей или сфер управления.

Координация работы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ведомств по подготовке проекто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Статья 16. Изучение практики применени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орган, разрабатывающий проект:

- изучает и учитывает практику примене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по теме проекта, выявляет общественную потребность в правов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причины и условия, влияющие на эффективность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 обобщает и использует предлож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органов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граждан, предприятий, учреждений, организац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а также граждан, материалы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рекомендации научных учреждений, ученых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данные других средств выявл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 учитывает опыт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Проекты законов могут быть вынесены на всенародное обсуждение в порядке, установленно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Проект

[참고자료]

ы иных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могут выноситься на общественное 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суждение.

**Статья 17. Внесение проект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в орган, принимающий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Текст статьи в редакции Закона РУз от 03.12.2004 г. N 714-II)

(См. Предыдущую редакцию)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проект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вносится в орган, принимающий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с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в котором обосновываетс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инятия акта, указываются его разработчики, дается кратк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его содержания, приводится перечен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аций, с которыми проект согласован, кратко излагается содержание разногласий и мотивированное мнение о них. К проекту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лагаются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е расчеты,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и иные сведения для его обоснования.

Проекты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комитетами, ведомствами и другим и органами или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некоммерче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не обладающими правом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инициативы,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если иное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поручением о подготовке проекта.

Статья 18. Экспертиза проекто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Проекты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подлежат обязатель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е.

В ходе юрид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ы проверяется соответствие проект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Конституции 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а также правилам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техники.

Юридическая экспертиза мож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юридической службой органа, подготовившего проект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или органа, принимающего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а также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Юридическая экспертиза проектов решений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имеющих нормативный характер,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управлениями юстиции областей и города Ташкента. (Часть в редакции Закона РУз от 12.12.2003 г. N 568-II)

Для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внесен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решению органа, принимающего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проект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может быть подвергнут и иной экспертиз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финансовой,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экологической и другой). В качестве экспертов привлекаются организации и лица, не принимавшие ране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участия в подготовк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проект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экспертизы могут быть приглашены ученые и специалисты из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

[참고자료]

анизаций. В оценке проект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эксперты не зависимы и не связаны с позицией органа, по поручению которого проводится экспертиза.

Статья 19. Требования, предъявляемые к содержанию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Текст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излагается лаконично, простым и ясным языком. Используемые 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м акте понятия и термины применяются единообраз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их значением, принятым в действующе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исключая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личного толкования. Не допускается употребление устаревших и многозначных слов и выражений, образных сравнений, эпитетов, метафор.

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м акте могут указываться правовые средства его реализации, включая источник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меры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поощрения и контроля.

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м акте, устанавливающем обязан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органов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граждан, предприятий, учреждений, организац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а также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и граждан,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меры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их нарушение, если такие меры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или не должны быть установлены в особом акте.

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может включаться преамбула, содержащая разъяснение мотивов и целей его принятия. Нормативные предписания в преамбулу не включаются.

В законах нормативные предписания излагаются в виде статей, имеющих порядковый номер. Статьи законов могут подразделяться на части. В частях статей могут содержаться пункты, подпункты и абзацы. В иных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ах нормативные предписания излагаются в виде пунктов, имеющих порядковый номер. Пункты могут подразделяться на подпункты и абзацы.

Статьи (пункты) близкого содержания значительных по объему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объединяются в параграфы и главы. В необходимых случаях главы могут объединяться в разделы и подразделы. Разделы, подразделы, главы и параграфы имеют заголовки и нумеруются.

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ах могут быть даны определения вводимых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юридических, технических и других специальных терминов.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м акте воспроизводятся отдельные положения из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в более высокой юридической силы со ссылкой на такие акты.

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ах, как правило, не воспроизводятся повторно нормативные предписания, содержащиеся в действующих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ах той же юридической силы.

Ссылки в статьях (пунктах)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на другие его статьи (пункты), а также на иные действующ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их отдельные положения применяются в случаях, когда необходимо показать взаимную связь нормативных пр

[참고자료]

едписаний либо избежать повторений.

Статья 20. Удостоверение официального текст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Удостоверение официального текст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производится путем его подписания - в отношении:

- закон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постановле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палаты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Спикером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палаты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Абзац в редакции Закона РУз от 03.12.2004 г. N 714-II) (См. Предыдущую редакцию)

- постановления Сената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ената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Абзац введен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РУз от 03.12.2004 г. N 714-II)

Абзацы четвертый - седьмой считать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абзацами пятым - восьмы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РУз от 03.12.2004 г. N 714-II

-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постановлени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ли, по его поручению,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ведомств - руководителем органа, принявшего акт;

- решения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хокимом.

Статья 21. Реквизиты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имеют следующие реквизиты:

- вид и наименование акта;

- место, дата принятия и номер акта;

- фамилия, должность и подписи лиц, официально уполн

омоченных удостовер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Статья 22. Представлен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регистрац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омитеты и ведомства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 дней со дня приняти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참고자료]

представляют их в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д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Статья 23. Пересмотр ранее принятых
актов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нового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нового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необходимые изменения или дополнения вносятся в ранее приняты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и подлежат признанию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все ранее принятые акты или их части, если они противоречат новым нормативным предписаниям либо полностью поглощены новым актом или фактически утратили свое значение, но официально не признаны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IV. ОПУБЛИКОВАНИЕ,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И ДЕЙСТВ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Статья 24. Требования к опубликованию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Статья 25. Официальные источники опубликовани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Статья 26.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Статья 27. Обратная сил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Статья 28. Действ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во времени

Статья 29. Действ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по кругу лиц

Статья 30. Прекращение действи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Статья 24. Требования к опубликованию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должны быть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официальных изданиях. Никто не может быть осужден, подвергнут наказанию или лишен имущества на основании закона, который официально не опубликован для всеобщего сведения.

Официальное опубликован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в изложении не допускается.

При официальном опубликовании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указываются все его реквизиты.

Опубликован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в неофициальных изданиях, а такж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через электронные справочные системы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допускаются после их опубликования в официальных источниках и с обязательным указанием всех р

[참고자료]

еквизитов, официальных источников опубликования и даты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Статья 25. Официальные источники опубликовани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Официальными источниками опубликования закон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становлений палат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указов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являются “Ведомости палат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газеты “Халк сузи” и “Народное слово”. (Часть в редакции Закона РУз от 03.12.2004 г. N 714-II) (См. Предыдущую редакцию)

Официальными источниками опубликования постановлен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являются “Собрание постановл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газеты “Халк сузи” и “Народное слово”. (Часть в редакции Закона РУз от 12.12.2003 г. N 568-II) (См. Предыдущую редакцию)

Официальными источниками опубликовани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ведомст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являются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фициальные издания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ведомств. (Часть в редакции Закона РУз от 12.12.2003 г. N 568-II) (См. Предыдущую редакцию)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публикуются в официальных изданиях данных органов.

Статья 26.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Законы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алат Олий Мажли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а также решения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вступают в силу через десять дней после их официального опубликования, если в самих актах не указан иной срок. (Часть в редакции Закона РУз от 03.12.2004 г. N 714-II)

Указы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ступают в силу в порядке, установленном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ли Кабинетом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 подлежат обязательному опубликованию.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ведомств вступают в силу через десять дней после 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если в самих актах не указан более поздний срок.

В десятидневный срок со дн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министер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итетов и ведомств подлежат доведению до сведения всех заинтер

[참고자료]

есованных лиц. Доведен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до сведени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лиц мож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любых формах, обеспечивающих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ый (свободный) доступ к ознакомлению с текстом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Статья 27. Обратная сил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не имеют обратной силы и применяются к отношениям, возникшим после введения их в действие.

Действие закона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отношения, возникшие до введения его в действие, лишь в случаях, когда это прямо предусмотрено законом. Придание обратной силы не допускается, если зако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ведение или ужесточение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юридических и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за действия, которые на момент их совершения не влекли указа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ли влекли более мягк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либо наносит материальный ущерб юридическим и физическим лицам.

Статья 28. Действ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во времени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действует бессрочно, если в его тексте не оговорено иное.

Временный срок действи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может быть установлен для всего акта или его частей. В этом случае в акте должно быть указано, на какой срок или до наступления какого события он (его часть) сохраняет действие.

До истечения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срока или наступления события орган, принявший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может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о продлении действия акта на новый срок, до наступления другого события, или о придании ему бессрочного характера.

Статья 29. Действ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по кругу лиц

Действ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граждан 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а также на находящих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ностранных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ес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оговором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не установлено иное.

Статья 30. Прекращение действи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его часть) прекращает свое действие в случаях:

[참고자료]

- истечения срока или наступления события, на который был рассчитан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его часть);
- признани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его части) не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м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законом порядке;
- признани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его части) утратившим силу, отмены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акта в случаях,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законом.

V. ЗАКЛЮЧИТЕЛЬНЫЕ ПОЛОЖЕНИЯ

Статья 31. Толкован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Статья 32. Систематические издани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Статья 33.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чет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Статья 31. Толкован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Толкован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случае обнаружения неясностей 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м акте, не правильной или противоречивой практики его примен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нституцией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толкование законов дает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кистан.

Официальное толкование подзаконных актов дают органы, их принявшие.

В процессе толкования не допускается внесение в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поправок, дополнений и конкретизирующих норм.

Статья 32. Систематические издани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Органы, принимающ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издают собрания и сборники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либо дают поручения об их издании иными органами 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 порядке, установленно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Министер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омитеты и ведомства издают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нные сборники принятых ими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поддерживают сборники в контрольном состоянии, издают к ним дополнения, переиздают их.

Статья 33.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чет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чет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централизованный сбор и регистрацию таких актов, с

[참고자료]

оздание и поддержание в контрольном состоянии их фондов и централизова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б этих актах. Порядо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чет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пределяется Кабинетом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И. Каримов

Узбекистан

“Народное слово”, 2001 г. № 3, 4 января